

발 간 등 록 번 호

11-1220892-100004-10

2025

ACVA

연차보고서

2025 ACVA Annual Report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관 세 청
관세평가분류원

제1장 ACVA 제도의 이해	6
Ⅰ. ACVA란 무엇인가?	6
Ⅱ. ACVA 연혁	8
Ⅲ. 일반사전심사 제도와 비교	12
제2장 ACVA와 APA	14
Ⅰ. 관세평가 제도와 이전가격 세제	14
Ⅱ. ACVA와 APA의 비교	16
Ⅲ.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세제와의 조화	18
제3장 ACVA의 처리절차	20
Ⅰ. 전체 흐름도	20
Ⅱ. 사전상담	20
Ⅲ. 신청접수	22
Ⅳ. 검토 및 협의	24
Ⅴ.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 상정	24
Ⅵ. (심사종결) ACVA 심사 결과 통보 및 결정서 교부	26
Ⅶ. 연례보고서 제출	28
Ⅷ. ACVA 변경 · 철회 · 취소	30
제4장 ACVA의 혜택	32
제5장 ACVA 신청인의 권리보호	36
제6장 ACVA와 관세조사의 관계	36
제7장 ACVA 통계	38
[부록] 1. 1문 1답	
2. 관련 서식	
3. ACVA 신청 구비서류 가이드라인	

Chapter 1 The Basics of ACVA Program	7
Ⅰ. What is ACVA?	7
Ⅱ. ACVA History	9
Ⅲ. Comparison between ACVA and VAR	13
Chapter 2 ACVA & APA	15
Ⅰ. Customs Valuation and Transfer Pricing Taxation	15
Ⅱ. Comparisons between ACVA and APA	17
Ⅲ. Harmonization between Customs Valuation and Transfer Pricing Taxation	19
Chapter 3 ACVA Process	21
Ⅰ. Flow Chart	21
Ⅱ. Pre-consultation	21
Ⅲ. Application	23
Ⅳ. Examination & Consultation	25
Ⅴ. ACVA Committee	25
Ⅵ. ACVA Decision Notification & Ruling Issuance	27
Ⅶ. Submission of Annual Report	29
Ⅷ. ACVA Modification, Withdrawal & Revocation	31
Chapter 4 ACVA Benefits	33
Chapter 5 ACVA Confidentiality	37
Chapter 6 Relationship between ACVA and PCA	37
Chapter 7 ACVA Statistics	39
[APPENDIX] 1. FAQ	
2. Document form	
3. Guideline on documents required for ACVA application	

2025
ACVA Annual Report

Abbreviations and Acronyms

1	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s Arrangement
2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3	ALP	Arm's Length Price
4	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5	VAR	Valuation Advance Ruling
6	CRIT	Combined Repor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7	CVCI	Customs Valuation and Classification Institute
8	CUPM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9	KCS	Korea Customs Service
10	MNEs	Multinational Enterprises
11	NTS	National Tax Service
12	PCA	Post Clearance Audit
13	RPM	Resale Price Method
14	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15	TP	Transfer Price
16	TPSM	Transactional Profit Split Method
17	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제1장 ACVA 제도의 이해

I ACVA란 무엇인가?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는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관 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수입 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면, 관세 등 세액을 비용으로 반영한 적정 수준의 국내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즉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할 경우, 추후 세관 당국의 사후 세액심사에 의해 추징을 당할 위험이 상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세 등 세액 추징은 기업에 예기치 못한 비용을 유발하여 경영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세관 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ACVA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CVA 제도는 다국적 기업에 납세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관 당국에게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사후심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호혜적인 제도입니다.

Chapter 1 The Basics of ACVA Program

I What is ACVA program?

The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VA”) refers to an advance agreement between a taxpayer and the customs authority, at the request of the taxpayer, on customs valuation of imports traded between related parties, i.e., an overseas parent company and its domestic subsidiary.

Accurate customs valuation at the time of import declaration would help taxpayers to determine domestic sale price as appropriate by factoring in customs value as cost and carry out a stable and predictable domestic business. Yet, determination of customs value of imported goods, namely customs valuation, requires substantial knowledge and expertise, and if the taxpayer who lacks an understanding of this fails to accurately declare the customs value of imported goods, there is a risk of being imposed of a duties by customs authorities. It should be noted that declaring incorrect value for customs is subject to penalties from post-clearance audit, causing unintended economic consequences and a greater business uncertainty.

This is where the ACVA program comes in; the program is intended for taxpayers to determine customs value prior to import declaration in cooperation with the customs authorities, so that they can steer clear of potential risks and make informed decisions for their business. In this sense, it is right to say that ACVA program is mutually beneficial to the customs authorities and traders both, because it provides tax predictability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NEs”) while guaranteeing steady stream of revenue and lowering administrative cost for the customs.

II ACVA 연혁

한국 관세청(KCS)은 특수관계자들 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 형태와 그 특수성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과 세관 당국 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세 마찰을 줄이고자, 2008년 「관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37조 제1항 제3호 개정을 통해 ACVA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ACVA 신청내용에 대한 수정요구 및 수정신청 절차 신설 등 심사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2012년에는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ACVA 결과와 같이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ACVA와 APA를 동시에 신청하여 관세청과 국세청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ACVA와 APA 간 사전조정제도(법 제37조의2)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에는 외국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류 축소(9종 → 3종), 처리기한 단축(1년 → 6개월) 등 ACVA 신청을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Easy ACVA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ACVA 활성화를 위해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그 동안 관세평가 분류원에서 전담해 오던 ACVA 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국 5개 본부세관으로 확장하였으며, ACVA 결정의 정확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ACVA 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법령 개정을 통하여 ACVA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게 하였고, 연례보고서 제출 및 ACVA 결정 내용의 변경·철회·취소의 근거를 관세청 고시에서 「관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상향 입법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ACVA 적용(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례보고서 제출기한도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관세조사 등에 활용될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ACVA 제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였습니다.

II ACVA History

The Korea Customs Service (KCS) introduced the ACVA program through the amendment of Paragraph 1.3 of Article 37 under the Customs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in 2008 to reduce frequent tax friction between MNEs and customs authorities due to its complex and diverse types of transactions.

In 2010, KCS revamped the program with some new elements, including new procedure for request for amendment and application for amendment. In 2012, there came a new benefit of removing penalties for mis-declaration for those goods, on which customs duties self-assessed and paid before ACVA application was corrected according to ACVA decision.

In 2014, as a part of efforts to ease the inconvenience of taxpayers, an advance adjustment program(Act 37.2), in which both KCS and National Tax Service (NTS) have to decide based on consultation, was put in place that allows taxpayers to seek ACVA and APA programs at the same time. The year of 2015 was when a new sub-program Easy ACVA was launched. As its name suggest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of a foreign nationality have easy access to ACVA program with less documentary requirements (from 9 down to 3), and shorter timeframe (from 12 months down to 6).

Furthermore, in 2017, audit system was overhauled for the sake of wider access and availability of ACVA program. ACVA program and its post-monitoring, which Customs Valuation and Classification Institute (CVCI) was in charged, now falls under the purview of 5 Regional Customs. And ACVA Committee was established with a view to beefing up a transparent and accurate decisions-making process.

And the revision to legislation came along in 2018 to ensure that taxpayers may seek re-examination of ACVA decision within 30 days after it has been received. Legal grounds, for annual report submission and modification/withdrawal/revocation of ACVA rulings, are stipulated in enforcement decree of Customs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Enforcement Decree”), a higher legal instrument than KCS Notice (referred to as th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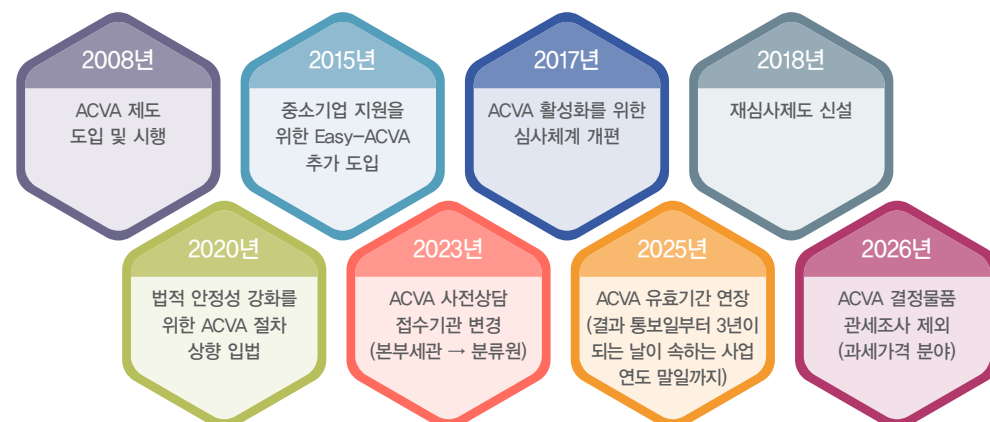
In 2019, ACVA application(effective) period can be extended, and the annual report submission period has been extended to enhance the convenience of taxpayers. In addition, in order to eliminate any potential risks of data being used for other purposes, such as customs audit, the provision that data submitted by applicants shall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ACVA rulings, was formulated in enforcement decree, a higher legal instrument than Notice.

2020년에는 ACVA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의 반려 사유 등 ACVA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관세청 고시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하였고, 2021년에는 ACVA 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범위를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에서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으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의 본부세관에서 이루어지던 ACVA 사전상담 접수가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이관되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5개 본부세관에서 수행하던 사전심사를 3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전심사는 신청인의 본사 소재지 또는 주통관지 관할 본부세관에서 담당하게 되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이던 기존의 ACVA 유효기간을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이 속하는 날의 사업연도 말일까지’로 연장하여 납세자가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 안정적으로 ACVA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ACVA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시 ACVA 결정물품의 과세가격 분야(ACVA 심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에 한함)를 원칙적으로 관세조사 범위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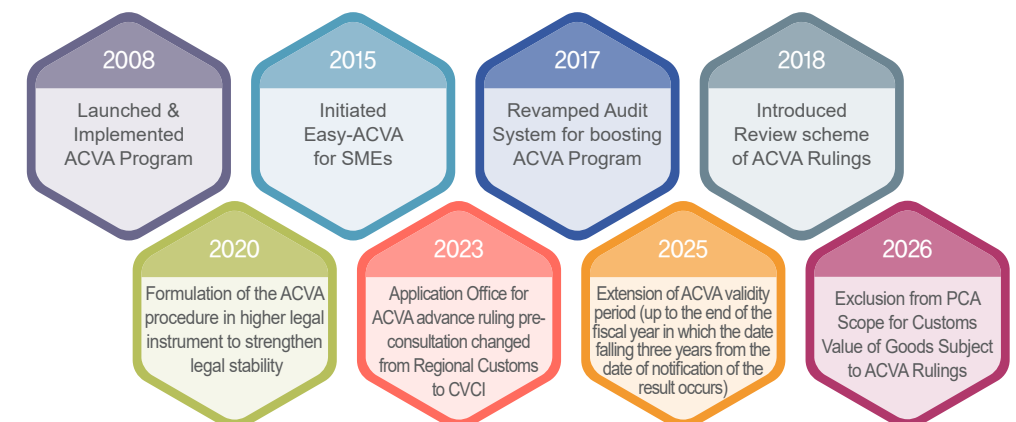


In 2020, details of ACVA program, such as submission required documents, reasons for rejecting applications were enacted as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 of Customs Act, higher legal instruments than Notice. When taxpayers correct customs duties according to the ACVA ruling, the amount of penalty relief for mis-declaration has been adjusted in 2021 from the amount of tax reported and paid prior to the application for advance ruling to the amount reported and paid prior to the date of notification of the result.

From 2023, the Customs Valuation and Classification Institute will take over ACVA consultation application process which had been carried out at Regional Customs. In addition, advance ruling which had been carried out at 5 Regional Customs will be carried out at 3 Regional Customs(Incheon, Seoul, Busan) for more professional advance ruling. Advance ruling will be processed at Regional Customs where applicant's headquarters or its main port of entry is located, which will enhance both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Starting in 2025,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was amended so that the validity period of ACVA, which had bee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of the result, is now extended to the end of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date falling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he result occurs. This amendment will allow taxpayers to apply ACVA in a stable manner until the end of that fiscal year.

Starting in 2026, to reduce the burden on companies with ACVA rulings, the customs value of goods subject to ACVA rulings will, in principle,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Post Clearance Audit (PCA) conducted on such companies, to the extent that the relevant matters have already been verified through ACVA examination.



III 일반 사전심사 제도와 비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는 非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에 대한 ‘일반 사전심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와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에 대한 ‘ACVA’(법 제37조 제1항 제3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사전심사의 대상은 최근까지 법 제30조의 내용 중 실제지급가격과 가산·공제요소 및 거래가격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법 제30조(거래가격 방법) 뿐 아니라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포함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전심사는 ‘非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수입물품을, ACVA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수입물품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CVA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특성 상,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등 거래가격 배제 사유 해당 여부, 가산·공제요소를 비롯하여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부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물품이라 하더라도 특정 지급액의 가산·공제 요소 해당 여부 등 일부에 한정하여 사전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일반 사전심사로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전심사와 ACVA의 차이점]

구 분	일반 사전심사	ACVA
근 거	• 관세법 제37조제1항 제1~2호	• 관세법 제37조제1항 제3호
대 상	•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사항 • 제30조 적용 불가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31~35조)〈 非특수관계자 간 거래 물품 〉	•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용기간	• 3년	•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 + 2년(최장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
절 차	• 신청 → 검토 → (일방적)결정서 교부 (→ 재심사 가능)	• 신청 → 검토 → 검토의견 통보(→ 재심사 가능) → 동의 → 결정서 교부
사후관리	• 별도 절차 없음	• 연례보고서 제출

III Comparison between ACVA and VAR

Advance Ruling on customs valuation is divided into two types; “Valuation Advance Ruling(referred to as VAR)” for general imports traded between unrelated parties(Article 37.1.1 and 2 of the Act), and “ACVA” for imports in related party transactions(Article 37.1.3 of the Act).

Until recently, the subject of VAR was limited to whether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elements of addition/deduction, and the transaction value was unacceptable from the application of 「Article 30 of the Act」. However, it has been expanded to cover all methods of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included in Articles 31 through 35 since 2019 to support honest taxpayers. Therefore, VAR is targeting the imported goods of “un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the ACVA is targeting the imported good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Basically, ACVA program is intended to examine all considerations; whether transaction value cannot be accepted du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rs, factors of addition/deduction, as well as rules on customs valuation from Articles 30 to 35 of the Act. It is also noted that upon request, VAR is open to imports of related-party transaction, but with some limited scope for application (such as whether the specific payment amount is added or deducted).

[Comparison between VAR and ACVA]

Category	VAR	ACVA
Legal Base	• Article 37.1.1 and 2 of the Customs Act	• Article 37.1.3 of the Customs Act
Subject	• Matters prescribed in Article 30.1 through 3 • Article 30 determination of customs value When Not Applicable (Articles 31 to 35) 〈Transaction goods between unrelated parties〉	• Determination of the customs value of goods traded between related parties
Valid period	• 3 years	• Up to the last day of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date falling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ACVA ruling issuance falls + 2 years (up to the last day of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date falling five years from the date of issuance falls)
Process	• Application → Evaluation → (unilateral) Ruling issuance (→ re-examination possible)	• Application → Evaluation → Decision notification (→ re-examination possible) → Consent → Ruling issuance
Post-monitoring	• No additional procedures	• Submission of Annual Report

제2장 ACVA와 APA

I 관세평가 제도와 이전가격 세제

「관세법」의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제도는 물품의 수입 시점의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이 목적이고, 과세 단위가 각 수입신고 물품(건)으로서 개별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하므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및 물품 자체의 특성이 주된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와 달리 국세청의 내국세 목적 상 이전가격 세제(Transfer Pricing Taxation)는 다국적 기업의 (특수)관계회사 간 부당한 소득이전을 방지하고 국가 간 과세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과세단위가 사업(회계) 연도로서 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이윤에 대해 과세하므로, 관계회사 간 거래에서 각 당사자들의 기능 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관세평가 제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세제의 차이점]

구 분	관세평가 (Customs Valuation)	이전가격 세제 (Transfer Pricing Taxation)
法 源	- WTO 관세평가협정 - 관세법	-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원칙	Transaction Value(거래가격)	Arm's Length price(정상가격)
과세대상 (표준)	개별 수입물품 (유형의 재화) <가격(물품원가)>	모든 형태의 국제거래 (재화, 용역, 자산, 금융 등) <기업의 소득(이윤)>
평가단위	수입신고 건	사업(회계)연도 단위
평가방법	거래가격 방법(최우선) 이하 순차적 방법(Sequential order)	최적 방법(Best method rule)
비교가능성 기준	물품의 유사성(Product similarity)	재화의 유사성 뿐 아니라 기능분석, 계약조건, 경제적 환경 등 비교가능성 검토

Chapter 2 ACVA and APA

I Customs Valuation and Transfer Pricing Taxation

Customs valuation is to determine customs value with accuracy at the time of importation, and its focal point is the transaction value and characteristic of imported goods, because customs duty is levied on imported goods at each transaction.

On the contrary, transfer pricing taxation by NTS is aimed at preventing taxpayers from illegitimately shifting profit within a group of MNEs and fairly distributing taxable income between and among countries. Tax is imposed on corporate profits that a given company earns for a business(fiscal) year. The focus is the functions of parties involved, which draws the line between TP taxation and customs valuation.

[Comparison between Customs Valuation and Transfer Pricing Taxation]

Category	Customs Valuation	Transfer Pricing Taxation
Legal Base	-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 Customs Act	-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 -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Principle	Transaction Value	Arm's Length price
Subject to tax (standard)	Individual imported goods (tangible goods) < price (cost of goods) >	All forms of international trade (goods, services, assets, finance etc.) < corporate income(profit) >
Valuation Unit	Import declaration case	Business(fiscal) year
Methods	Transaction value method(top priority) below Sequential methods	Best method rule
Comparability Criteria	Product similarity	Review of comparability such as functional analysis, contract terms, and economic environment as well as similarity of goods

II ACVA와 APA의 비교

국세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를 통하여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 범위(Arm's length range)에 대하여 세무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PA의 종류는 당사자에 따라 일방 APA, 쌍방 APA, 다자간 APA로 구분되며, 일방 APA는 어느 한 국가의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합의하는 것이며, 쌍방 또는 다자간 APA는 둘 또는 그 이상 국가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들이 개입하여 협상하고 동시에 합의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의 ACVA와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법적근거, 신청대상, 평가방법 등에서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ACVA와 APA의 차이점]

구 분	ACVA	APA
법적근거	- WTO 관세평가협정 - 관세법(제37조)	-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TP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신청대상	- 재화 - 수입신고가 예정된 물품	- 재화, 용역 및 서비스 - 이전가격제제 대상이 되는 모든 과세기간별(연도별) 거래
결정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평가방법	- 제1방법에서 제6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 제1방법(거래가격) - 제2방법(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 제3방법(유사물품 거래가격) - 제4방법(공제가격) - 제5방법(산정가격) - 제6방법(합리적기준)	- 제1순위 :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방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재판매가격방법 - 원가가산방법 - 이익분할방법 - 거래순이익률방법 - 제2순위 : 기타 합리적인 방법
사전심사 효력	- 사전심사결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 -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2년 연장 가능) 수입신고 되는 건에 효력, 소급 적용 불가	- 사전승인내용에 적합한 신고를 행한 경우 동 신고는 정상가격으로 간주 - 통상 5년 적용, 소급적용 가능(쌍방 APA는 7년, 일방 APA는 5년)

II Comparison between ACVA and APA

NTS runs Advance Pricing Arrang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PA") program whereby a taxpayer and the tax authorities reach a consensus in advance on the method of determining arm's length price and the range of the arm's length price most applicable to related party transaction.

The types of APA are unilateral APA, bilateral APA, and multilateral APA. Unilateral APA is an agreement between a taxpayer and the tax authorities of a country on how to calculate the arm's length price, and bilateral or multilateral APA is a system in which the taxpayers of two or more countries, their counterparts, and the tax authorities of the respective countries intervene to negotiate and agree at the same time.

What ACVA and APA have in common is the handling of related-party transaction, but they differ in their respective legal basis, applicable subject and the determining method, etc.

[Comparison between ACVA and APA]

Category	ACVA	APA
Legal Base	-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 Customs Act(Article 37)	-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4)
Applicable subject	- Goods - Goods scheduled for import declaration	- Goods and Service - All transactions based on taxable years subject to transfer price taxation
Time frame of Ruling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filing the application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filing the application
Methods	- Applicable methods in hierarchical order - Method 1 Transaction value method - Method 2 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goods method - Method 3 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method - Method 4 Deductive method - Method 5 Computed method - Method 6 Fall-back method	- The most appropriate one out of the followings is primarily chosen: -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M) - resale price method (RPM) - cost plus method - transactional profit split method (TPSM) -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 Otherwise, other reasonable methods are chosen secondarily.
Terms of Validity	Value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ACVA rulings is accepted as customs value for up to the last day of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date falling 3 years (extended by 2 years) from the date of ruling issuance falls, retrospectively inapplicable	- When proper declaration was made on APA approval, the declaration is accepted as 'arm's length price' - valid for five years, retrospectively applicable (seven years for bilateral APA, five years for unilateral APA)

III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세제와의 조화

이전가격 세제는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관세평가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내국세 목적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것이고, 해당 이전가격 또는 이익률이 그 정상가격 범위에 있다고 하여 관세 목적상 거래가격이 항상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 당국의 관심사는 어떤 가격이 당사자 간 특수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즉,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가격을 찾아내는 것이고, 국세 당국의 목적은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을 찾는 것인데, 이 둘 모두는 각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정상적인 비즈니스 조건 하에서 협상되었던 것처럼 가격이 책정되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책정 방법론에는 유사한 점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세 목적의 이전가격 세제가 다국적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특수관계자들 간의 재화와 용역의 가격(TP) 결정이나 국제거래의 가치사슬이 이를 기초로 설계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인 ‘판매 주변상황 검토’ 즉, ‘판매자와 구매자가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해당 가격이 결정된 방법’의 검토에 있어, 다국적 기업이 조세 목적상 작성하는 이전가격 책정 보고서(Transfer Pricing Study/Report)는 훌륭한 정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관 당국이 오로지 이전가격 책정 보고서와 관련 문서들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며, 결국 세관 당국은 다양한 출처를 가진 ‘증거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기초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III Harmonization between Customs Valuation and Transfer Pricing Taxation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has a fundamental difference from the customs valuation in its purpose and method. Therefore, taxpayers are well-advised to note that transaction value for the purpose of customs valuation is not always acceptable even if taxpayer's method of determining transfer price is acceptable as the method of determining arm's length price for the tax purpose and the price and profit rate are within arm's length price r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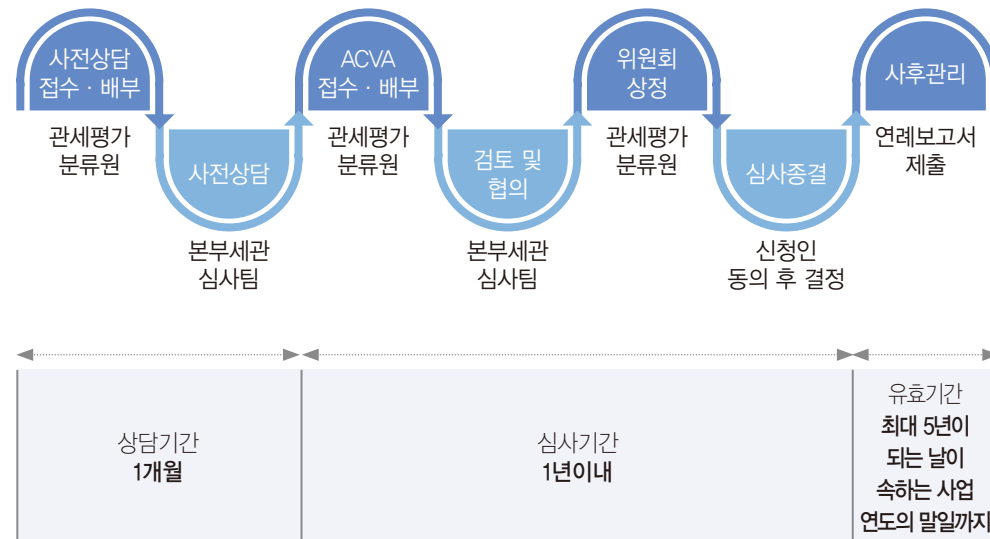
The customs authorities' interest is to find out whether a price is "influenc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e., the price was not affected by the relationship, and the purpose of the national tax authorities is to determine the "arm's length price", both of which should be proved by price determined as if each party is unrelated and it was negotiated under normal business condition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customs valuation and the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In addition, transfer price taxation for internal tax purposes plays a prominent rol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MNEs, and mostly used to determine the price of goods and services between related parties and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value chai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is designed on this basis.

In view of this, 'examination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ale', which is a method of judging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has affected the price of imported goods, that is, 'how the seller and the buyer organize their commercial relationship and how prices were determined', transfer pricing reports prepared by MNEs for tax purposes can be an excellent source of information. Of course, customs authorities do not have to rely solely on transfer pricing reports and related documents, and in the end, customs authorities will make a decision based on a 'totality of the evidence' from various sources.

제3장 ACVA의 처리절차

I 전체 흐름도



II 사전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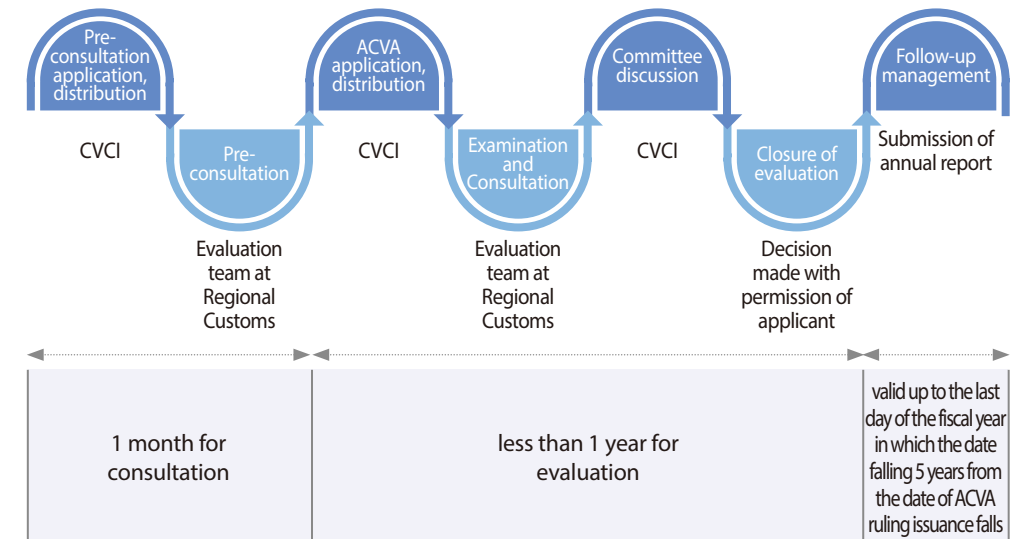
관세청은 원활한 ACVA 업무처리를 위해 신청 전 사전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은 ACVA 신청가능 여부, 신청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에 관해 납세자와 세관당국이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납세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ACVA에 관하여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상담을 수행할 본부세관장을 지정하여 상담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사전상담을 통해 향후 ACVA 심사 업무처리 절차,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제출 서류, 주요 쟁점 등을 협의하게 되며, 이를 통해 납세자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향후 심사 과정과 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므로 원만한 심사 진행을 위해 사전상담을 거칠 것을 권고합니다.

Chapter 3 ACVA Process

I Flow Chart of ACVA Process



II STEP 1: ACVA Pre-Consultation

Korea Customs Service has pre-consultation program in which taxpayers can consult customs authorities about the availability of ACVA applications, the process, required documents, and detailed procedures.

Taxpayers may request pre-consultation to the head of Customs Valuation and Classification Institute, who in turn designates the head of Regional Customs that provides the consultation service within 1 month after the receipt of request.

The pre-consultation is not mandatory, but it helps taxpayers to learn and understand the entire process of ACVA they will go through, required documents for application, key issues, etc., so taxpayers are advised to apply for pre-consultation for smooth ACVA process.

III 신청접수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2호 서식)를 다음의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 구비서류 (시행령 제31조 제1항)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 · 대리점계약서 · 기술용역계약서 · 기술도입 계약서 등)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 가격결정의 근거자료
5. 그 밖에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ACVA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시행규칙 제7조의10 제1항)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3. 원가분담 계약서, 비용분담 계약서 등 수입물품 거래에 관한 서류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 ①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 ②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 ③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산출근거자료 및 자산 ·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가 포함된 보고서
 7. 판매 형태에 따라 구분한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 · 매출원가
 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서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받은 본부세관장은 제출서류가 과세가격 결정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ACVA 신청서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III STEP 2: ACVA Application

An applicant should submit『ACVA Application Form [for related persons] (annex No. 22 form of Notice on the operation of customs valuation)』along with the documents listed below to the head of Customs Valuation and Classification Institute.

Documents required for ACVA application (Article 31.1 of the Enforcement Decree)

1. Basic contract on Transaction Relations (investment contract, agency contract, technical service contract and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etc.)
2. Business plan related to imported goods
3. Imported goods supply contract
4. Evidence for determining the price of imported goods
5. Other reference documents required for determining customs value

Additional documents required for ACVA application (Article 7-10.1 of the Enforcement Rules)

1. Business Descriptions of a transaction party; business history, business profil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investment relations, etc.
2. Financial statement and ALP declaration (intangible property and service transactions included), which have been declared with regional tax office over the recent three years
3. Import contract documents such as contracts of cost-sharing and expense-sharing, etc.
4. Documentary evidence on how to compute the value of import goods
 - ① Financial documents about goods value computation
 - ② Explanatory notes about the assumption or the condition which goods value computation is based on
 - ③ Internal guideline and policy of value determination of related-party transaction
5. APA approval document, if applicable
6. Transfer Price report including analysis on how to compute and what influences value of properties and service prepared by an accounting firm, if applicable
7. The recent three-years of revenue and sales cost by respective imported goods, classified by sales type
8. Document verifying that transaction value has been 'un-influenced' by related party provided that documents stated above in article 2 and 7 may be waived only if deemed 'irrelevant' by head of customs office to the method of determining customs value.

Head of Regional Customs who was designated to proceed with advance ruling may request the applicant to submit supplementary documents within a period of 30 days if the information provided deemed insufficient. And the application may be rejected if the supplementary documents are not submitted within the defined period of time.

IV 검토 및 협의

본부세관장은 신청인(구매자)과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등 거래가격 배제 사유 해당 여부, 가산·공제요소를 비롯하여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부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ACVA 검토 과정에서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도 할 수 있습니다.

본부세관장은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신청인은 당초 신청서의 내용 중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수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충설명 및 사실관계 확인에 대하여 거부·방해 또는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심사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V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 상정

본부세관의 ACVA 검토가 완료되면 관세평가분류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내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에 상정되어 ACVA 검토가 관세평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IV STEP 3: ACVA Examination & Consultation

Head of regional customs office examines decision methods of customs value from Article 30 to 35 of the Act as well as reasons transaction value may be unacceptable such as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rs has influenced the price, factors of addition/deduction from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If documents submitted are insufficient, applicants may be requested to provide additional documents or explanation on documents already submitted, and an on-site visit could be made by the Customs for the purpose of fact-checking.

Head of regional customs office may request applicants to correct the method applied for valuation, if deemed unacceptable and the applicants may modify contents of application and reapply.

Until final decision is made by the head of the CVCI, applicants cannot reapply or withdraw his application.

In addition, ACVA application may be rejected if applicants do not submit required documents in the defined period of time, impede the fact-checking or do not respond to questions properly.

V STEP 4: ACVA Committee

Once head of regional customs office examines the ACVA application, the matter is brought before the 'ACVA Committee', chaired by the head of CVCI and made up of internal experts. The Committee deliberates whether ACVA application has been properly examin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VI (심사종결) ACVA 심사 결과 통보 및 결정서 교부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ACVA 심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합니다. ACVA 심사 결과 통보는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 의견서【특수관계자용】」(고시 별지 제29호 서식)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인이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하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고시 별지 제30호 서식)를 교부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통보받은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하는 경우 그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검토의견에 부동의함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은 ACVA 결정서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그 결정서 내용에 따라 적용기간(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내에 신고한 과세가격은 세관장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VI STEP 5: ACVA Decision Notification & Ruling Issuance

When a final decision is made on ACVA application through the deliberation of the ACVA Committee it is communicated to a taxpayer in writing in a form of 「An Opinion Letter of ACVA Decision [for related persons] (annex No. 29 form of Notice)」.

When the applicant informs the head of CVCI of its consent in writing no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receipt of an opinion letter of ACVA decision, the head issues 「ACVA Ruling Letter [for related persons] (annex No. 30 form of Notice)」 within 15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consent.

If the applicant raises an objection to the notified opinion letter, he/she may file a re-examination applicat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he/she is notified. However, it is deemed to have been withdrawn if the applicant fails to apply for a re-examination within 30 days despite the disagreement with the opinion letter, or fails to notify consent.

Once ACVA ruling has been granted, the applicant shall comply with the ruling, and the customs value declared within due period (up to the last day of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date falling five years from the date of ACVA ruling issuance falls) will guarantee approval from the head of regional customs office.



VII 연례보고서 제출

ACVA는 결정서 교부 이후 수입물품에 대해 효력을 갖는 것으로, ACVA 결정의 전제가 된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ACVA 결정서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특정한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을 전제로 결정조건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ACVA 결과 이행 내역 등을 포함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본부세관장)은 이를 기초로 ACVA 결정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등의 변동이 없는지, 납세자가 ACVA 결정 내용을 준수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연례보고서」(고시 별지 제34호 서식)를 ACVA를 검토한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례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시행령 제31조 제8항 및 고시 제56조)

1.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출자관계, 재무제표, 수입물품 전체 현황,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별 가격산출방법
5. 주요 매입처별 매입원가 및 매출처별 매출원가 등 상품 및 제품 가격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6. 그 밖에 본부세관장이 연례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당해연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VII STEP 6: Submission of Annual Report

The ACVA program is the advance ruling system on customs value of goods in future importation thus, the premises such as transaction relations, transaction condition, market circumstances, and economic situation might change at the time of actual importation. In addition, the valuation methods in the ACVA ruling are often based on specific base or hypothetical situation.

The applicants, once an ACVA ruling has been issued, are obliged to submit an annual report to verify their compliance with the ACVA ruling, based on which the head of CVCI (or head of regional customs office) keeps monitoring if there are any changes to statements in ACVA application, or the taxpayers declare customs value according to the ACVA ruling.

The taxpayers, to whom an ACVA ruling has been issued, shall submit within 6 months since the last day of the business year, the ACVA Annual Report (Annex No. 34 form of Notice) to the head of regional customs office who had examined ACVA application with the following elements. The applicants may seek extension period of up to 1 month for reasonable reasons, such as HQ's delayed information sharing.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annual report (Article 31.8 of the Enforcement Decree and Article 56 of the Notice)

1. Realization or non-realization of grounds or assumption which the Method of determining customs value is based on
2. Customs value calculated from the determined Method, and calculation process thereof
3. Documentary evidence on how discrepancy has been dealt with between computed customs value and price actually paid
4. Business history, business model, organizational structure, investment relations, financial statement, the overall current state of imported goods, import-related contract, and how to compute customs value by import goods.
5. Information necessary for exa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merchandise/product value like purchase/sales cost
6. Any other information deemed necessary by head of regional customs office for examination of the annual report

In case less than 6 months are left from the date of ACVA ruling issuance until the closing date of the business year, an annual report for a given year may be carried forward and incorporated into that of the following year.

VIII ACVA 변경·철회·취소

■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신청인도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으로 이미 사전심사를 받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ACVA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1조 제10항 제1호

1.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2. 관련 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3.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10항 제2호

1. 신청인이 제8항에 따른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이 제8항에 따른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10항 제3호

1.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VIII ACVA Modification, Withdrawal and Revocation

■ Modification

The head of CVCI may modify ACVA rulings that have already been issu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nd applicants may seek the modification to customs valuation in case a change arises to legislation or transaction relationship.

Article 31.10.1 of Enforcement Decree of Customs Act

1. Where any important part of assumptions or premises, which the determined method for customs valuation is based on, has been modified or unrealized;
2. Where amendment to relevant legislations or international convention has rendered the determined method inappropriate;
3. Where a taxpayer seeks to modify the determined method due to changes in domestic and overseas market condition;
4. Any grounds set and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KCS where it is deemed necessary to modify the determined method.

■ Withdrawal

The head of CVCI may withdraw ACVA ruling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rticle 31.10.2 of Enforcement Decree of Customs Act

1. Where an applicant did not present supplemental information despite Customs request to submit missing parts of the (annual) report, of the whole or of significance, under paragraph 8;
2. Where parts of the (annual) report, of significance, under paragraph 8 are intentionally missing or false by an applicant;

■ Revocation

The head of CVCI may revoke ACVA ruling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rticle 31.10.3 of Enforcement Decree of Customs Act

1. Where information, of significance, under paragraph 1 (application form and its attached documents) is intentionally missing or false by an applicant;
2. Where an application has made a customs declaration not in aligned with the method or terms and condition set forth in an ACVA ruling;

제4장 ACVA의 혜택

■ ACVA의 일반적인 효력

세관장은 납세자가 ACVA 결정서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납세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청인과 납세자가 동일한 경우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효력 발생 요건 (관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1. ACVA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2. 사전심사 시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3.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4.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2년 연장 가능) 이내에 신고될 것

따라서 ACVA 결정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세관장의 관세 조사에 따른 사후 추징 등 납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경영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면제

ACVA 신청시점부터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ACVA 결정에 따라 확정가격신고 시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CVA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ACVA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부족세액의 10%)가 면제됩니다.

Chapter 4 ACVA Benefits

■ ACVA Validity

The head of customs office shall accept customs valuation method declared by taxpayers pursuant to ACVA rulings, in the following cases; such as the applicants being the persons liable for duty payment.

Requirements for ACVA validity (Article 31.7 of Enforcement Decree of Customs Act)

1. An applicant shall be the person liable for duty payment.
2. Statements in ACVA application have no misinformation and are the same with the facts of dutiable value with approved Method.
3. There shall be no change to transaction relations or legislation which ACVA ruling has been based on.
4. The import declaration shall be made within the last day of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date falling three years (extended by two year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of the ACVA ruling falls.

Therefore, if the customs value has been reported faithfully in accordance with the ACVA decision, the tax uncertainties such as the post-tax collection following post clearance audi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CA") can be resolved and a stable management environment can be secured.

■ Penalty waiver

Applicants are eligible for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from the time of filing ACVA application. They are exempted, in full, from penalties for tax deficiency that may arise at the time of final value declaration at a later stage as per ACVA rulings.

Furthermore, if taxpayers correct customs duties having been that are self-assessed and paid before the notification of the ACVA result, they will be exempted from penalties for mis-declaration(equivalent to 10% of tax deficiency) if they do so within two months after the ruling is issued.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생략

ACVA 결정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잠정가격신고 전자통관심사 허용

ACVA 결정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시 전자통관심사를 허용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요건 (일부) 충족

ACVA 검토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정될 경우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대상 요건 중 기본이 되는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요건 (시행규칙 제3조제2항)

1. 납세의무자가 ACVA 또는 APA 승인업체일 것
2.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였을 것
 -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 ACVA 또는 APA 승인서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 관세와 국세 간 사전조정제도 이용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의 ACVA와 국세청의 APA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가 있고, 이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관세청과 국세청은 서로 협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국세 간 사전조정 제도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등이 겪고 있는 관세, 내국세의 이중적 세부담의 우려 및 중복 자료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음

근거법령은 관세법 제37조의2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이며, 과거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만 조정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한정하였으나, '18.7.1부터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조정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Waiver of submission of data for determination of a customs value

For goods subject to ACVA rulings, the submission of data for determination of a customs value may be waived.

■ Electronic customs screening for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The system has been improved to allow electronic customs screening for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s in accordance with ACVA rulings, thereby enabling expedited customs clearance.

■ Fulfillment of Basic Requirements for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for a compensating adjustment

If an ACVA examination finds that transaction value has been 'un-influenced' by related-party transaction, it fulfills the basic requirements for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for a compensating adjustment.

The Requirements for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for a compensating adjustment (Article 3.2 of Enforcement Rules of Customs Act)

1. A person liable for duty payment is a business entity with ACVA or APA rulings
2. Adjustment Plan Report shall be presented to head of customs office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attached until one month before import declaration
 - Description of how to calculate value by respective imported goods
 - Document of ACVA or APA rulings
 - Combined Repor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CRIT)
 - Any other information that may be requested by head of customs office to verify that the requirements for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are met.

■ Availability of Advance Tax-Duty Adjustment Scheme

Advance tax-duty adjustment scheme enables taxpayers to apply for ACVA with the customs authorities (KCS) and APA with the tax authorities (NTS) at the same time for the sake of their convenience. Upon the application from taxpayers, customs and tax authorities work together to have coordinations on customs value for the purpose of duties and on arm's length price for the purpose of internal taxes.

Advance tax-duty adjustment scheme was introduced in 2014 in order to relieve the double burden of tax liabilities and of filing duplicate documents, which weigh down MNEs doing business in Korea.

Its legal base lies in 「Article 37, 2 of Customs Act」 and 「Article 18 of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 Act」, under which adjustment used to be allowed only if the method of determining customs value is similar with that of calculating arm's length price, however, now allowed under revised relevant legislation, in any occasions, effective from July 1, 2018.

제5장 ACVA 신청인의 권리보호

관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으며, ACVA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의 철회가 있는 때에는 제출된 모든 자료를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ACVA를 위하여 관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협의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장 ACVA와 관세조사의 관계

관세조사는 ACVA 신청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하나,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 되었더라도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통지하기 전에 신청인이 ACVA를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관세조사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조사의 유예를 요청받은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동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ACVA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시 ACVA 결정물품의 과세가격 분야(ACVA 심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에 한함)를 원칙적으로 관세조사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Chapter 5 Applicants' Right to Confidentiality

The Customs ensures that all information and sources presented by applicants are kept confidential and not used for any other purpose than ACVA rulings. All documents presented shall be returned to applicants at their request of withdrawal.

Applicants can appoint authorized agents, such as customs brokers, to assist them in ACVA process.

Chapter 6 Relationship between PCA & ACVA

In principle, on-going PCA is not suspended by ACVA application, however, when an applicant applies for ACVA before the head of regional customs office give notice of PCA, he/she may request the suspend of PCA on customs value of goods for which ACVA is sought. The head of the customs main office shall report the requested delay to the Commissioner of KCS, under whose order may postpone PCA.

Furthermore, when conducting PCA on companies with ACVA rulings, the customs value of goods subject to ACVA rulings has, in principle, been excluded from the scope of PCA to the extent that the relevant matters have been verified through ACVA exam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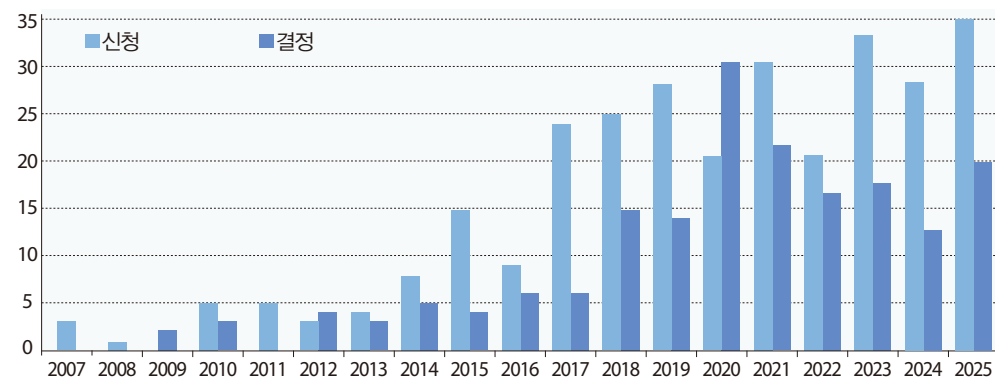
제7장 ACVA 통계

I ACVA 신청 및 처리 현황

(2025.12.31.현재, 단위: 건)

연도	신청	결정	진행	철회 · 반려
2007	3	-	3	-
2008	1	-	4	-
2009	-	2	2	-
2010	5	3	3	1
2011	5	-	7	1
2012	3	4	6	-
2013	4	3	6	1
2014	8	5	9	-
2015	15	4	17	3
2016	9	6	13	7
2017	24	6	31	-
2018	25	15	40	1
2019	28	14	49	5
2020	21	31	34	5
2021	31	22	38	5
2022	21	17	38	4
2023	34	18	48	6
2024	29	14	56	7
2025	35	20	69	2
합계	301	184	-	48

2025년까지 ACVA 신청은 총 301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184건이 결정되었습니다. ACVA 신청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17년 이후 혜택 확대, 제도 개선 등 지속적 ACVA 활성화 정책 추진과 ACVA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증가로 인해 신청건수가 급증하였습니다. 2017년 ACVA 심사체계 개편 이후 각 본부세관에서 ACVA 심사를 수행하면서 신청 및 결정 건수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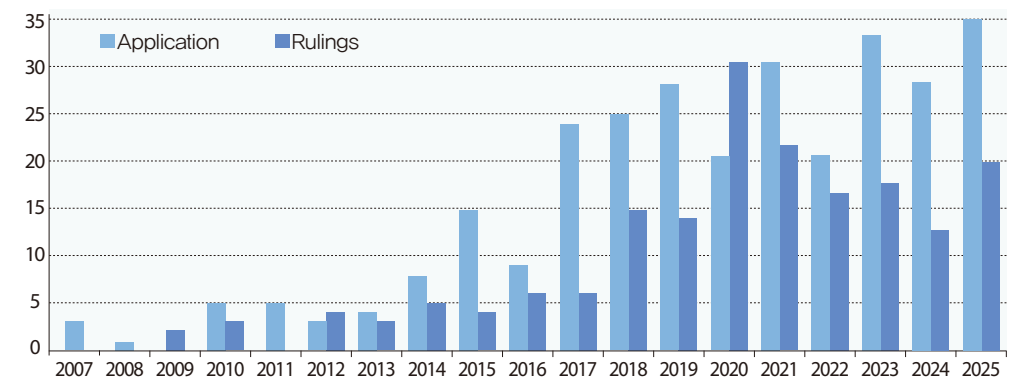
Chapter 7 ACVA Statistics

I ACVA Applications and Rulings

(Dec 31, 2025, unit : case)

Year	Application Filed	ACVA Rulings Issued	In Progress	Withdrawn or Rejected
2007	3	-	3	-
2008	1	-	4	-
2009	-	2	2	-
2010	5	3	3	1
2011	5	-	7	1
2012	3	4	6	-
2013	4	3	6	1
2014	8	5	9	-
2015	15	4	17	3
2016	9	6	13	7
2017	24	6	31	-
2018	25	15	40	1
2019	28	14	49	5
2020	21	31	34	5
2021	31	22	38	5
2022	21	17	38	4
2023	34	18	48	6
2024	29	14	56	7
2025	35	20	69	2
합계	301	184	-	48

By 2025, the total of 301 ACVA applications were lodged, among which 184 rulings were issued. The number of application is on the rise in general, especially, from 2017 onward, there has been drastic spike in application, largely because of the continuous promotion of ACVA facilitation policies such as expanding benefits and improving the system and the wider public awareness of ACVA. The number of applications and decision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2017 when Regional Customs began to conduct ACVA evaluation as a result of ACVA system revision.



II ACVA 처리기간

(2025.12.31. 현재, 단위: 건)

연도	평균	소요기간				
		계	1년 이하	1년 초과 1년 6개월	1년 6개월 2년 이하	2년 초과
2008~2025	580일	184	30	57	56	41
2018*~2025	590일	151	21	50	48	32
2025	755일	20	0	4	6	10

* 2017년 ACVA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본부세관 ACVA 접수 이후 최초 결정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집계

최초 ACVA가 결정된 2008년부터 2025년까지는 ACVA 접수부터 결정까지 평균 580일(약 1년 7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자료 보완요구에 소요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은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ACVA 접수 전 사전상담 활성화, 초기 실무회의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I Processing time for ACVA Ruling

(Dec 31, 2025, unit : case)

Year	Average time required	Time Frame (yrs)				
		Total	1 or less	1-1.5	1.5 - 2	2 or more
2008~2025	580 days	184	30	57	56	41
2018*~2025	590 days	151	21	50	48	32
2025	755 days	20	0	4	6	10

* statistics from 2018 when the first ruling was issued as a result of revision of ACVA evaluation system in 2017

From 2008(when ACVA rulings were first issued) to 2025, it takes on average 580 days (about 1 year and 7 month) from ACVA application to its ruling. This period includes the time required for requesting supplementary documents.

Korea Customs Service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expedite the process, including actively running ACVA pre-consultation programs, and holding initial working-level meetings.



Ⅲ 수입품목(HS)별 ACVA 결정 현황

(2025.12.31.현재,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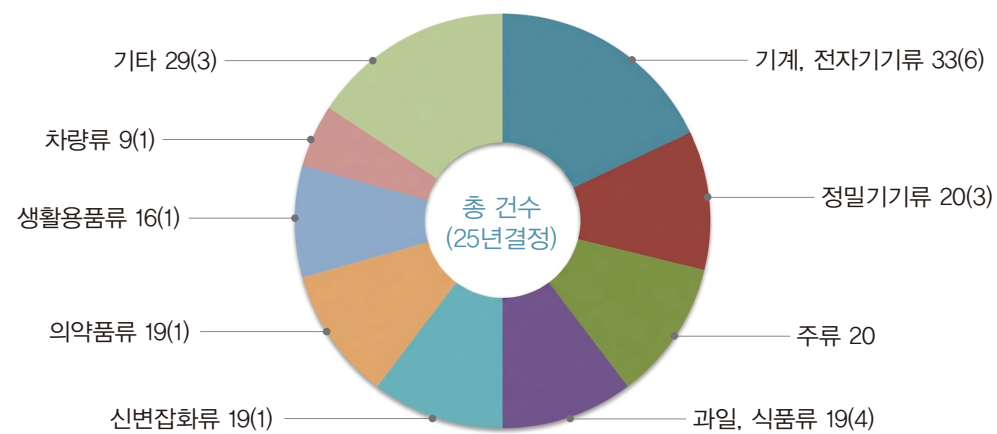
HS 2단위(류)	수입품목	전체현황 (‘25년결정)
84류 원자로 · 보일러 ·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기계 · 전기기기류	33 (6)
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 · 음성 재생기 ·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 부속품		
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과일 · 식품류	9 (3)
0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3
08류 식용의 과일과 견과류, 감귤류 · 멜론의 껍질		3
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4 (1)
22류 음료 · 주류 · 식초	주류	20
71류 천연진주 · 양식진주 · 귀석 ·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신변잡화류	6
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 ·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누에의 거트 제외]의 제품		6
61류 의류와 그 부속품		5 (1)
64류 신발류 · 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속품		1
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1
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 화장용품	생활용품류	10 (1)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5
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1
90류 광학기기 · 사진용 기기 · 영화용 기기 · 측정기기 · 검사기기 · 정밀기기 · 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정밀기기류	20 (3)
30류 의료용품	의약품류	15
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4 (1)
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 부속품	차량류	9 (1)
기 타(24/26/27/28/29/32/34/37/40/48/70/73/94/95류)	기타	29 (3)
합 계		184 (20)

Ⅲ ACVA Rulings by Imports (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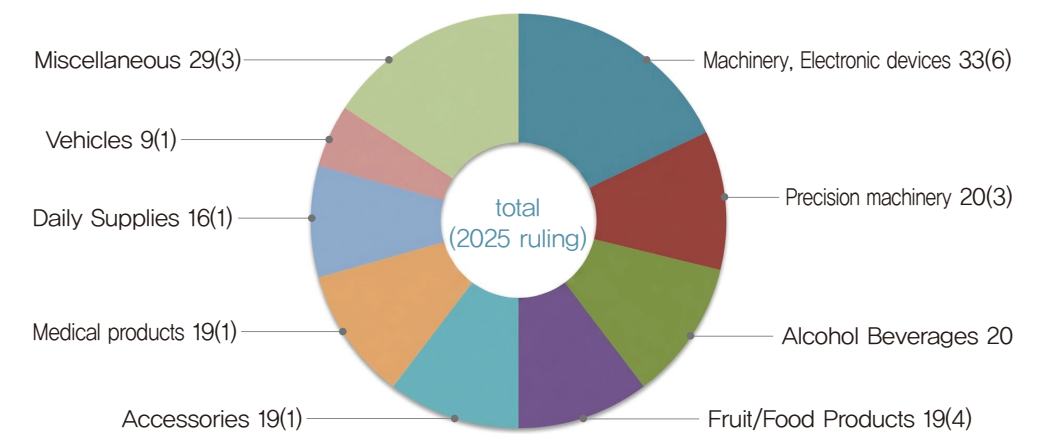
(Dec 31, 2025, unit : case)

2-Digit HS (chapter)	Imports	No. (2025 ruling)
84 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parts thereof	machinery, electronic devices	33 (6)
85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and parts thereof;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and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21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	Fruit/Food Products	9 (3)
04 Dairy produce; bird's eggs; natural honey; edible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3
08 Edible fruit and nuts; peel of citrus fruit or melons		3
18 Cocoa and cocoa preparations		4 (1)
22 Beverage, spirits and vinegar	Alcohol Beverages	20
71 Natural or cultured pearls,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precious metals, metals clad with precious metal, and articles thereof; imitation jewellery; coin	Accessories	6
42 Articles of leather; saddlery and harness; travel good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 articles of animal gut(other than silk-worm gut)		6
61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5 (1)
64 Footwear, gaiters and the like; parts of such articles		1
91 Clocks and watches and parts thereof		1
33 Essential oils and resinoids; perfumery, cosmetic or toilet preparations	Daily Supplies	10 (1)
39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5
76 Aluminum and articles thereof		1
90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checking, precision, medical or surg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Precision machinery	20 (3)
30 Pharmaceutical products	Medical products	15
38 Miscellaneous chemical products		4 (1)
87 Vehicles other than railway or tramway rolling stock,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Vehicles	9 (1)
Others (chapter 24/26/27/28/29/32/34/37/40/48/70/73/94/95)	Others	29 (3)
Total		184 (20)

현재까지 결정된 ACVA 품목을 HS 2단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제84류·85류의 기계·전자기기류가 33건(18%), 제22류의 주류가 20건(11%), 제90류의 정밀기기류가 20건(11%), 제42류·제61류·제62류·제64류·제71류·제91류의 신변잡화류가 19건(10%)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제87류 차량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25년 결정된 품목들을 살펴보면 기계, 전자기기류 6건(30%), 과일, 식품류 4건(20%), 정밀기기류 3건(15%)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품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By two-digit HS code, imports for which ACVA rulings have been issues so far include 33 cases (18%) of machinery and electronic devices of Chapter 84, 85, and 20 cases (11%) of alcohol beverages of Chapter 22, and 20 cases (11%) of precision machinery of Chapter 90 and 19 cases (10%) of accessories of Chapter 42, 61, 62, 64, 71, and 91. There are also other products such as vehicles of Chapter 87. Among these products whose rulings were issued in 2025, machinery and electronic devices (6 cases, 30%), Fruit/Food Products (4 cases, 20%) and precision machinery (3 cases, 15%) account for a high proportion and other various items await ACVA rulings.



IV 업종별 ACVA 결정 현황

(2025.12.31.현재,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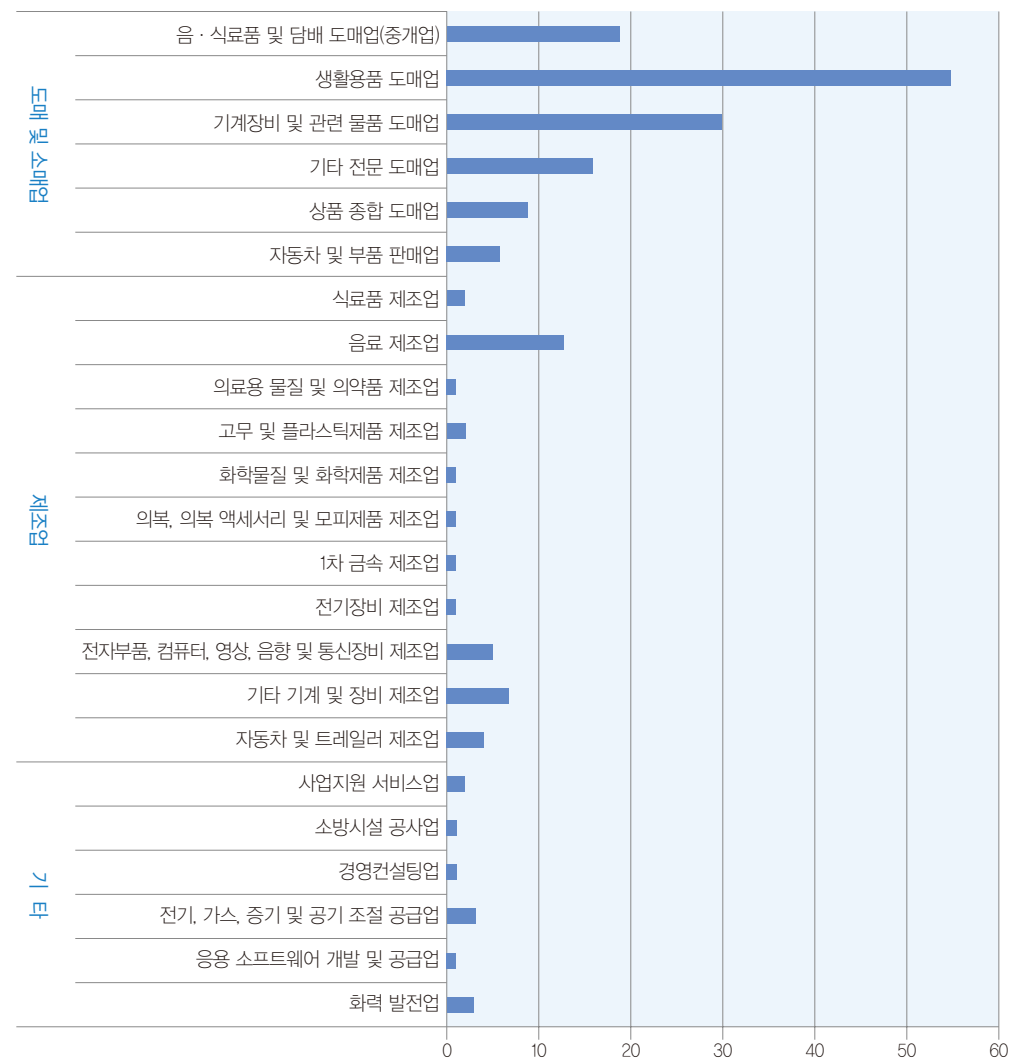
구 분	업 종	전체현황 ('25년결정)
도매 및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중개업)	19 (1)
	생활용품 도매업	55 (1)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30 (4)
	기타 전문 도매업	16 (3)
	상품 종합 도매업	9 (4)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 (3)
	소 계	135 (16)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1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
	1차 금속 제조업	1
	전기장비 제조업	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 (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 (1)
	소 계	38 (2)
기 타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2 (1)
	소방시설 공사업	1
	경영컨설팅업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화력 발전업	3 (1)
	소 계	11 (2)
합 계		184 (20)

IV ACVA Rulings by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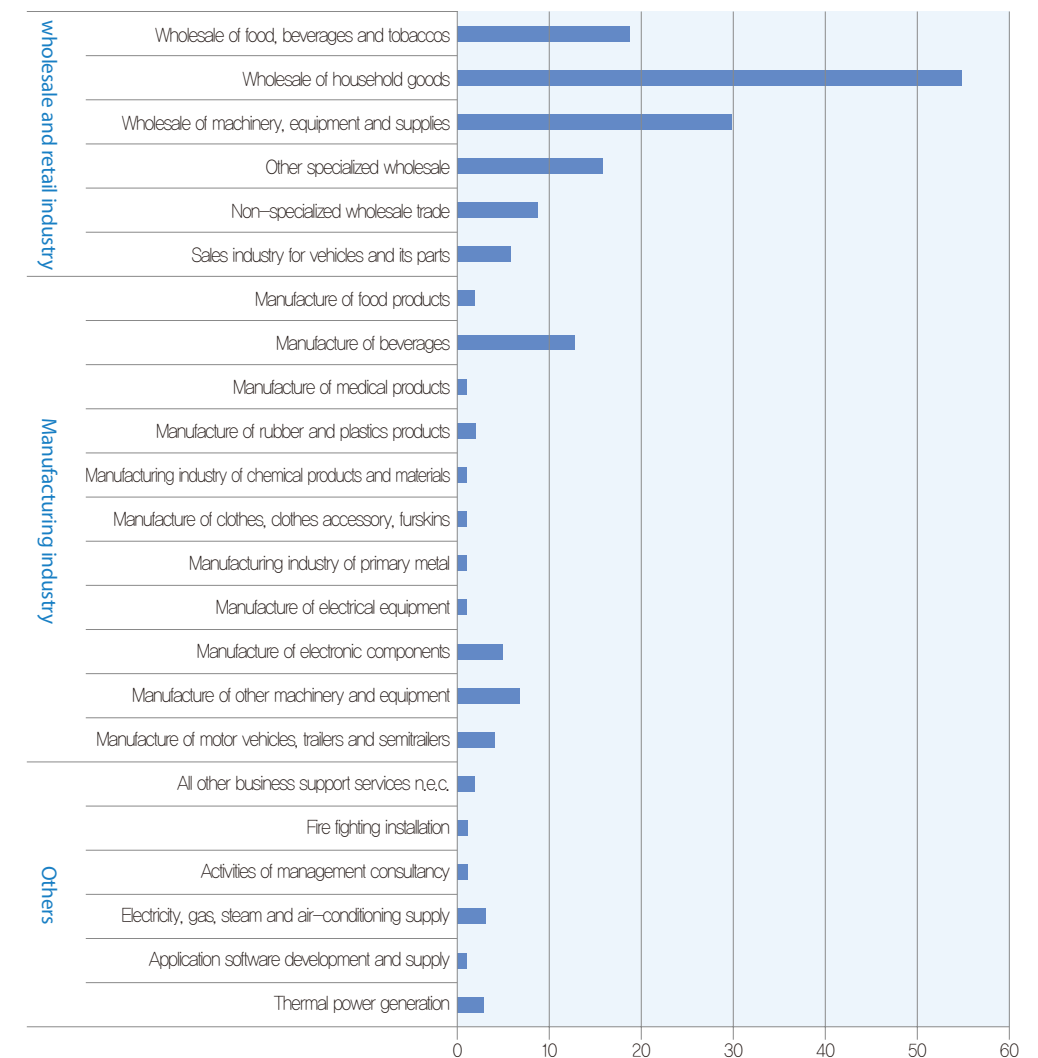
(Dec 31, 2025, unit : case)

Category	Industry	No. (2025)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Wholesale of food, beverages and tobaccos	19 (1)
	Wholesale of household goods	55 (1)
	Wholesale of machinery, equipment and supplies	30 (4)
	Other specialized wholesale	16 (3)
	Non-specialized wholesale trade	9 (4)
	Sales industry for vehicles and its parts	6 (3)
	subtotal	135 (16)
Manufacturing industry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2
	Manufacture of beverages	13
	Manufacture of medical products	1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s products	2
	Manufacturing industry of chemical products and materials	1
	Manufacture of clothes, clothes accessory, furskins	1
	Manufacturing industry of primary metal	1
	Manufacture of electrical equipment	1
	Manufacture of electronic components	5
	Manufacture of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7 (1)
	Manufacture of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4 (1)
	subtotal	38 (2)
Others	All other business support services n.e.c.	2 (1)
	Fire fighting installation	1
	Activities of management consultancy	1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conditioning supply	3
	Application software development and supply	1
	Thermal power generation	3 (1)
	subtotal	11 (2)
Total		184 (20)

ACVA 결정을 받은 납세자를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도매 및 소매업(135건, 73%)이 제조업(38건, 21%) 및 기타(11건, 6%)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매업 중에서는 생활용품 도매업이 55건(4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는 음료 제조업이 13건(34%)으로 가장 많고, 기타 업종으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화력 발전업 등이 있습니다. 이 중 2025년 결정 건의 업종은 도매업(16건, 80%), 제조업(2건, 10%), 기타(2건, 10%)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By industry of which ACVA rulings have been issues; wholesale and retail (135 cases, 73%) accounts for higher volume than manufacturing industry (38 cases, 21%) and others (11 cases, 6%). Wholesale of household goods (55 cases, 41%) accounted for highest volume followed by machinery and equipment supply, food and beverage, tobacco wholesale. In manufacturing industry, the number of cases for beverages is highest at 13(34%).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conditioning supply, thermal power generation are classified in others category. Among these, wholesale industry accounted for the biggest volume at 16 cases (80%) followed by manufacturing (2 cases, 10%), and others (2 cas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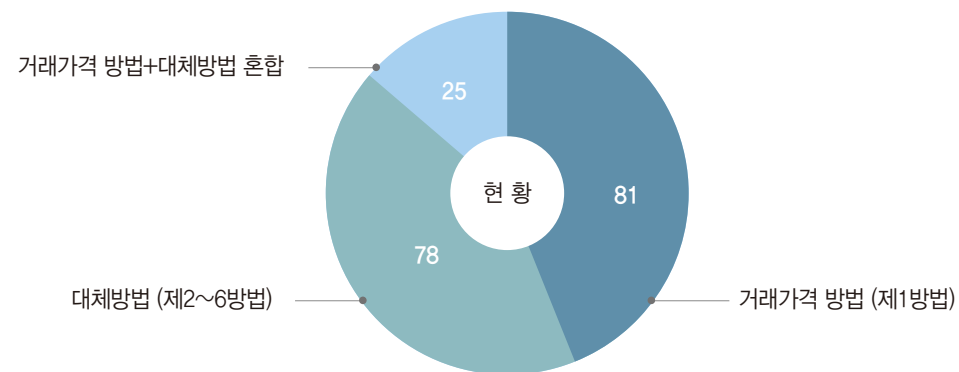


V 과세가격 결정방법 현황

(2025.12.31.현재, 단위: 건)

구 분	현 황 (’25년결정)
거래가격 방법 (제1방법)	81 (7)
대체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2~6방법)	78 (12)
거래가격 방법 + 대체방법 혼합	25 (1)
합 계	184 (20)

현재까지 결정한 ACVA 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81건(44%)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을 인정하는 방법(제1방법)으로 결정되었고, 78건(42%)은 대체 과세가격 결정방법(제2~6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거래가격 방법과 대체방법을 혼합하여 결정된 건은 25건(14%)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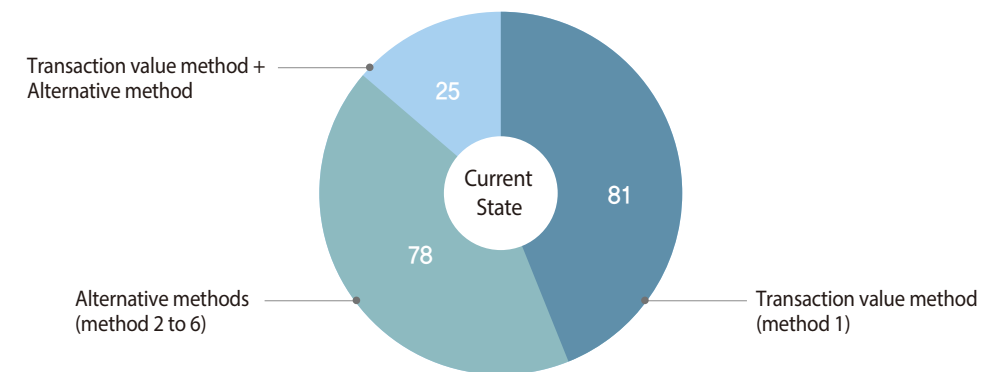


V ACVA Ruling by Customs Value Determination Method

(Dec 31, 2025, unit : case)

Category	No. of Rulings issued (2025)
Transaction value method (method 1)	81 (7)
Alternative methods (method 2 to 6)	78 (12)
Transaction value method + Alternative method	25 (1)
Total	184 (20)

Among the ACVA rulings that have been issued so far, 81 cases (44%), a significant portion, were determined by adopting the method of recognizing the transaction value between related parties (method 1) and 78 rulings (42%) were determined by alternative methods (method 2 to 6). In addition, 25 cases (14%) were decided by adopting both the transaction value method and the alternative methods combi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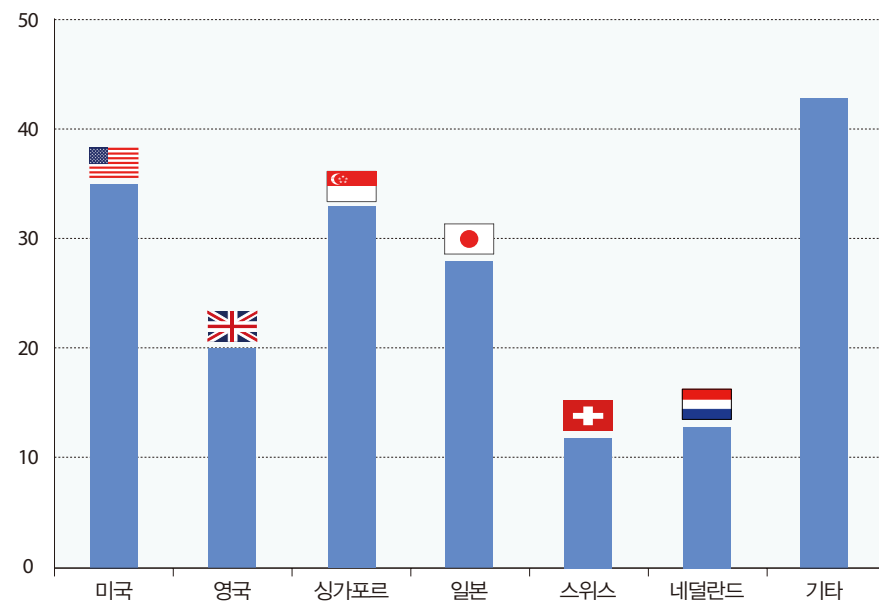


VI ACVA 결정물품 주요 수입국가 현황

(2025.12.31.현재, 단위: 건)

국가명	현황 (25년결정)
미국	35 (3)
영국	20 (2)
싱가포르	33 (6)
일본	28 (3)
스위스	12
네덜란드	13
기타	43 (6)
합 계	184 (20)

ACVA 결정물품의 주요 수입 국가는 미국(19%), 싱가포르(18%), 일본(15%), 영국(11%), 네덜란드(7%), 스위스(7%) 순이며, 기타 국가로는 뉴질랜드, 리히텐슈타인, 중국, 홍콩, 프랑스, 핀란드, 독일, 베트남, 호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결정물품의 수입 국가는 싱가포르(6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국가에는 중국, 독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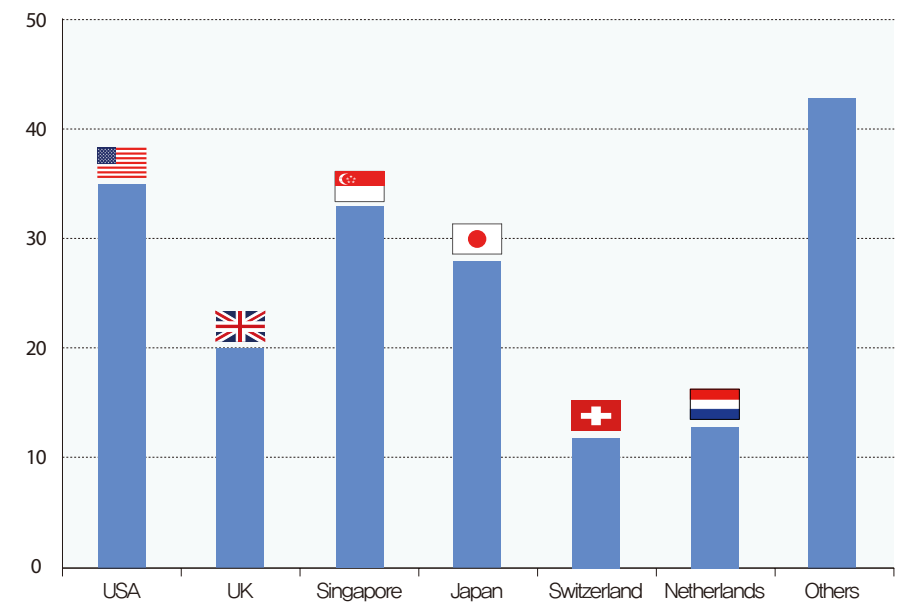


VI Major Countries that Companies with ACVA Rulings Import

(Dec 31, 2025, unit : case)

Nation	No. of Rulings issued (2025)
USA	35 (3)
UK	20 (2)
Singapore	33 (6)
Japan	28 (3)
Switzerland	12
Netherlands	13
Others	43 (6)
Total	184 (20)

The main importing countries of ACVA issued products are the US(19%), Singapore(18%), Japan(15%), the UK(11%), Netherlands(7%) and the Switzerland(7%) and other countries like New Zealand, Liechtenstein, China, Hong Kong, France, Finland, Germany, Australia, and Vietnam. Newly ACVA issued products in 2025 were imported from the Singapore(6 cases),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and Germany.



1문 1답

부 록

01 APA를 받았는데 ACVA도 받아야 되나요?

ACVA와 APA는 법적근거, 신청대상, 평가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APA를 받았다 하더라도 관세평가상 위험 제거를 위해 ACVA를 받는 것을 권장함

- 먼저 APA는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법인세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이며, ACVA는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임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단위는 사업연도이며,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단위는 수입신고 건임
- 즉, 법인세는 '재화 및 용역의 1년 단위의 합'에 대한 최종 소득에 부과되며, 관세는 개별 수입물품별로 부과되므로 APA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의 위험은 상존해 있음
- 기업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제세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국내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완료 후 세관의 관세조사로 인한 추징은 예측치 못한 비용이며, 회복할 수 없는 비용임
- ACVA는 이러한 관세 분야의 세무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므로 기업의 경영 안전성을 위해 적극 권장함
- 또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ACVA와 APA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F A Q

APPENDIX

01 With APA ruling issued, is ACVA still necessary?

Taxpayers are advised to obtain ACVA rulings in order to avoid any possible risks in customs valuation, despite their APA ruling being granted. That is because ACVA and APA are different in terms of legal base, applicable subjects, methodology and the like.

- Basically, APA is intended to remove risks relating to corporate tax on products and services in cross-border transaction between related parties, whereas ACVA is designed to eliminate customs duty risks on imports in related-party transaction.
- Corporate tax is applied to taxable profits of business year, while customs duty is imposed on imports at each import declaration.
- In other words, corporate tax is levied on one-year sum of profits in goods and service, whereas duty is levied on goods being imported at every transaction. Given this difference, it is safe to say that APA ruling itself does not guarantee the removal of duty liability risk on import goods.
- Businesses can take customs value into consideration when deciding on domestic sales price.
- They might face additional collection from customs audit conducted after the importation and sale of goods in a domestic market, which inflicts unpredictable and irrecoverable cost on businesses.
- Taxpayers are encouraged to make the best use of ACVA program as an effective enabler that fends off duty risks and brings stable, secure business environment.
- In addition, a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hat allows taxpayers to apply for ACVA and APA simultaneously in order to align the customs value for duties with the arm's length price for national taxes in advance.

1문 1답

부 록

02 ACVA와 관세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CVA는 향후 수입될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이며, 관세조사는 과거 수입된 물품에 대한 강제조사임 (제6장 참조)

- ACVA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세관 당국과 납세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전심사 제도임
- 즉, 납세자가 향후 수입할 물품에 대해 예정된 수입(이전)가격 산정방법 등 거래내용과 계약관계 등을 질의하면, 세관 당국이 이를 토대로 적법한 과세가격을 검토하여 납세자와 협의(동의)를 통해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하고, 납세자는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하는 등 이행을 하는 것임
- 그러나 관세조사는 관세 부과제척 기간 내 과거에 수입된 물품을 대상으로 세관 당국에서 강제로 조사하는 것임
- 즉, 이미 거래사실, 계약관계 등이 확정되어 수입신고가 완료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고 관세법에 따른 세액 경정 등 필요 조치하는 것임

03 ACVA와 일반사전심사는 신청대상이 어떻게 다르나요?

사전심사의 신청대상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거래일 경우에는 ACVA 제도를, 그 외의 거래일 경우에는 일반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제1장 III절 참조)

- 2019년부터 일반사전심사 대상이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재 ACVA와 일반사전심사 대상의 차이는 수입물품의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지 아닌지 여부임
- 다만,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이라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특정 지급액의 가산·공제 요소 해당 여부 등 일부에 한정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 사전심사로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음

FAQ

APPENDIX

02 What does ACVA different from PCA?

ACVA is an advance ruling on goods which will be imported in future while customs audit is an enforced act on goods in the past importation. (refer to Chapter 6)

- ACVA is an advance ruling system in which both a taxpayer and the customs authorities consult and decide on customs valuation methods of imports traded between related parties.
- Under this system, when taxpayers seek inquiries to customs authorities about assumption-based transaction and contractual relations surrounding goods being imported in future, the customs authorities examines and determines appropriate customs value of goods concerne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applicants. Once the ruling is issued, taxpayers make import declarations accordingly.
- In contrast, PCA is a forced audit administered during exclusion period by the customs on goods that have already been imported.
- In other words, PCA is an act on goods in which its transaction and contract have been defined, to evaluate the validity on customs value and rectification customs values, if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Act.

03 What are applicable subjects for ACVA and VAR?

ACVA program is applicable to related-party transaction between a buyer and a seller, while VAR is applicable to transaction other than related-party ones. (refer to Chapter 1.III)

- From 2019, as the subject of VAR has been expanded to all methods of determining customs value from Articles 30 to 35 of the Customs Ac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ACVA and the subject of VAR is whether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of imported goods are related or not.
- However, even if a transaction was made between related parties, ACVA may be replaced by VAR, if there is a specific request for advance ruling on limited matters.

1문 1답

부 록

04 ACVA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ACVA 신청 및 결정은 적용(유효)기간 최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잠정가격신고 가능, 가산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짐 (제4장 참조)

- 세관장은 유효기간(결정일로부터 최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동안 ACVA 결정서에 부합하게 신고된 과세가격을 인정하여야 하고,
- ACVA 신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시점까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후 2개월 이내에 ACVA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ACVA 결정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 ACVA 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05 사전상담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ACVA 신청 전에 하는 사전상담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는 아니고,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 절차임

- 납세자는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미리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향후 ACVA 진행과정에 대한 사전 이해를 높이고 원만한 심사 진행을 위해 사전상담을 권고하고 있음

06 사전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사전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해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납세자의 본사 소재지, 주통관지를 고려하여 사전상담을 수행할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을 지정함

F A Q

APPENDIX

04 What are the benefits of ACVA program?

There are multiple ACVA benefits: The ruling may be valid up to the last day of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date falling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result falls,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and exemption of additional duties. (refer to Chapter 4)

- The competent customs accepts the customs value declared as per an ACVA ruling letter for valid period (up to the last day of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date falling five years from the date of decision falls).
- In case where a taxpayer uses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from the point of ACVA application, the taxpayer is exempted from penalties for tax deficiency incurred until ACVA ruling is issued.
- If taxpayers correct customs duties that are self-assessed and paid before the notification of the ACVA result, they will be exempted from penalties for mis-declaration if they do so within two months after the ruling is issued.
- For goods subject to ACVA rulings, the submission of data for determination of a customs value may be waived.

05 Is pre-consultation service a must?

Pre-consultation is not a must but an option.

- Pre-consultation service is available before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 Taxpayers are advised to use the pre-consultation service in order to have a clear picture of how ACVA process works.

06 Where can taxpayers get pre-consultation service?

Those who wish to use pre-consultation program must request to the head of Customs Valuation and Classification Institute, then the institute designates a Regional Customs(Incheon, Seoul, Busan) that will deliver the service considering the location of the applicant's headquarters, and main port of entry of the taxpayer.

1문 1답

부 록

07 ACVA 신청 전 국외 특수관계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나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ACVA 신청 전에 미리 해외 본사 또는 수출자와 협의할 것을 권장함

- ACVA 심사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수입가격 결정방법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함
- 또한, ACVA 결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결정조건 등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다국적 기업 본사 등의 이행 의지가 필요함
- 따라서 ACVA 심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에 대한 협조 및 ACVA 결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인과 해외 본사 또는 수출자 등과 협의가 중요함

08 ACVA 신청서를 접수할 때 구비서류는 모두 제출되어야 하나요?

ACVA 심사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특성 상,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등 거래가격 배제 사유 해당 여부, 가산 및 공제요소 해당 여부 등 거래가격 방법 뿐 아니라, 이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대체방법까지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구비서류는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임

- 다만, 일부 서류의 경우 ACVA 신청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 시점까지 제출하지 못한 서류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고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
- ACVA 심사에서 검토되는 자료의 범위는 최근 3년 동안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 자료임

F A Q

APPENDIX

07 Is it necessary to consult with foreign related-parties before ACVA application?

It is not mandatory, but it is recommended to consult with overseas headquarters or exporters in advance before applying for ACVA.

- The ACVA examination requires various information and evidence related to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including specific import pricing methods.
- In addition, the determination of the customs value method and conditions for ACVA decisions to be implemented requires the commitment of the headquarters of MNEs with key decision-making authority.
- Therefore, consultation with the applicant, overseas headquarters or exporter in advance is important for cooperation in providing data or information necessary for ACVA examination and for stable implementation of ACVA decisions.

08 Should documents be submitted when applying for ACVA?

ACVA examination is a process to see whether the relationship influenced the transaction value, or the trade is subject to addition or deduction, further, if all of the above are not applicable, alternative methods from Article 31 to 35 should be looked into, too. Thus, all the required documents are necessary for the evaluation.

- Some documents may be waived only if deemed irrelevant, by the head of regional customs office, to the method of determining customs value of import goods.
- The head of regional customs office requests applicants to submit additional documents if some documents are missing by due date within 30 days. If applicants fail to fulfill the request in due course, the application may be rejected.
- The scope of ACVA evaluation is on related-party transactions for the last three years.

1문 1답

부 록

09 ACVA 신청서가 반려될 수도 있나요?

네. 아래와 같은 경우 ACVA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첫째, 신청인에 대해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둘째, 신청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확인된 후에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셋째, 신청인에 대해 불복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넷째,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섯째, 해당 거래관계 또는 거래내용 등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신청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아울러, 사전심사 재심사 반복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재심사 결과에 대한 중복 재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ACVA 심사 과정에서도 반려될 수 있음

- 첫째,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충설명 요구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에 대하여 거부·방해 또는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둘째, 본부세관장의 수정요구에 대해 기간 이내에 수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셋째, 신청인이 수정신청한 내용이 불합리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넷째, 신청인이 본부세관장의 보완요청기간 이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FAQ

APPENDIX

09 Can the ACVA application be rejected?

Yes, ACVA application may be rejected in the following cases:

- First, if a PCA on the applicant is in progress

Second, if there is no change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or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after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is confirmed through the PCA of the applicant

Third, if the applicant filed for an appeal 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in progress

Fourth, if correction data for the application and required documents are not submitted

Fifth, i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deems it impracticable to conduct an advance ruling or review because the details of the application differ from important matters for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such as the relevant transaction relationship or details of the transaction.

- In addition, in order to limit repeated applications for ACVA re-examination, duplicate re-examination applications for re-examination results may be rejected.

It may also be rejected during the ACVA examination process in the following cases:

- First, if the applicant refuses, interferes with, or does not respond to questions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to a request for supplementary explanation or an on-site visit to confirm the facts

Second, if the request for amendment by the head of regional customs office is not responded within the due period

Third, if the method for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to be applied cannot be recognized because the amendment the applicant requested is unreasonable.

Fourth, if the applicant fails to supplement the application documents within the period specified by the head of the regional customs office.

1문 1답

부 록

10 ACVA 신청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ACVA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은 시점부터 신청대상에 대한 잠정가격 신고가 가능함

11 ACVA 심사를 받을 세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CVA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을 사전심사 검토세관으로 지정함

-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별 심사 인력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통관지 관할 본부세관을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세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또한, 본사 소재지 또는 주통관지가 대구세관과 광주세관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부산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평택직할세관 관할 구역인 경우에는 인천세관을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세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12 ACVA 심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CVA 결과통보는 자료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음

F A Q

APPENDIX

10 When does ACVA application start to take effect?

From the time when the ACVA application document and required documents are submitted to the Head of the Customs Valuation and Classification Institute and the application receipt is issued, a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may be made for the goods subject to the ACVA rulings.

11 In what way is Regional Customs that will conduct ACVA evaluation determined?

The head of Customs Valuation and Classification Institute(CVCI) designates a Regional Customs with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applicant's headquarters is located.

- However, the head of CVCI may appoint a Regional Customs with jurisdiction in which the main port of entry is located considering resources and work load.
- If the headquarters or the main port of entry is loca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Daegu Regional Customs or Gwangju Regional Customs, the head may appoint Busan Regional Customs, when it is Incheon Airport Regional Customs or Pyeongtaek direct control Regional Customs, the head may appoint Incheon Regional Customs as a competent authorities.

12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ACVA rulings?

ACVA decision is notified within 1 year (except period required for supplementary document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1문 1답

부 록

13 보완자료 제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30일 이내의 보완자료 제출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다만, 신청인이 해외 관계사로부터의 자료제공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음

14 ACVA 심사 시 현장방문은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현장방문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짐

- 이 경우, 신청인의 협조를 얻어 5근무일 이내에서 현장방문이 이루어지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근무일 이내 연장할 수 있음

15 ACVA 심사 도중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ACVA 심사 중 신청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F A Q

APPENDIX

13 What is the time limit of submission of additional documents?

The head of regional customs office has discretion to set the due period of time that does not exceed 30 days for which applicants shall submit the supplementary information.

- However, applicants may seek the extended period of not more than 30 days, in case they are unable to meet the due date in inevitable circumstances, such as obtaining sources from overseas.

14 Does ACVA Ruling include on-site visit all the time?

On-site visit is undertaken if deemed necessary in case it is hard to verify facts only with documents submitted by applicants.

- In this case, on-site visit is done within five working days if an applicant agrees to cooperate, and may be extended by another five working days for inevitable reasons.

15 Can I change the application during the ACVA examination?

During ACVA examination, the applicant may withdraw at any time until the head of CVCI notifies the result of the ACVA examination, and may change the details of the application if the transaction, etc. changes due to unavoidable reasons.

1문 1답

부 록

16

ACVA 심사 과정에서 수정요구와 수정신청은 어떠한 절차인가요?

고시 제51조 제8항 및 제9항의 수정요구 및 수정신청은 ACVA에서 필요적 절차가 아닌 임의적 절차로서 신청인과 세관 당국 간 원활한 상호 합의를 견인하기 위한 협의 과정(process of consultation)의 일부임

[수정 요구 및 수정 신청]

- 본부세관장은 ACVA 검토 결과,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 신청인은 수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당초 신청서의 내용 중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수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본부세관장(분류원장)은 사전심사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요구를 거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할 수 있음
- 그러나 ACVA는 신청인과 세관당국 간 상호 합의에 기반한 제도로써,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세관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은 무의미할 것임
- 따라서 수정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본부세관장이 당초 ACVA 신청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유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검토하여 수정신청함으로써 세관당국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FAQ

APPENDIX

16

What kind of procedure is the request for amendment and application for amendment during the ACVA process?

The request for amendment and application for amendment in Article 51.8 and 51.9 of the Notice is an optional procedure, not a mandatory, and is a part of the consultation process to promote a smooth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customs authorities.

[Request for amendment and application for amendment]

- If, as a result of the ACVA examination, it is determined that the method for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that the applicant wants to be applied is not acceptable, the head of the regional customs office may request the applicant to amend the reason by specifying the reason in writing.
- The applicant may apply for amendment of the method for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and whether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value is affected among the contents of the original application on the basis of reasonable grounds in writing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request for amendment.

- If, the head of the regional customs office (head of CVCI) determines that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that the applicant wants to be applied cannot be accepted after reviewing the details of the application for ACVA, he/she may notify the result of ACVA with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that is different from the one in the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ithout going through a request for amendment.
- However, ACVA is a system based on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customs authorities, and the unilateral decision of the customs authorities will not be effective if the applicant does not agree with the result of ACVA examination.
-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applicant who received the request to amend to review alternatives and apply for amendment so that the customs authorities can accept it and the head of the regional customs office can take care of the reason that the ACVA application was initially deemed difficult to be accepted.

1문 1답

부 록

17 ACVA 결정된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CVA 결과를 통보(결정서 교부)받은 이후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전심사를 받은 과세가격결정방법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 이 경우, 변경 요청에 대한 처리는 ACVA 신청부터 결정서 교부까지의 일반적인 사전심사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사전심사 결정서의 문구를 명확하게 하거나 신청품목을 단순 추가하는 등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실무회의,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변경할 수 있음
- 그러나 해당 거래내용 등의 중대한 변경으로 인해 당초 사전심사 결정서에 따른 과세가격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는 당초 ACVA 결정서의 철회를 요청해야 함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령의 개정 또는 사전심사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 등이 확인되는 경우 이미 결과 통보한 사전심사 결정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음

18 신청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청인에 의한 ACVA 신청 철회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함

- 또한, 신청인이 ACVA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부동의로 제출하고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철회된 것으로 봄

FAQ

APPENDIX

17 What can be done to modify ACVA rulings?

If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that has already been pre-examined needs to be modified due to a change in laws or transaction relations after receiving notification of ACVA ruling (issuance of ruling letters), the applicant must request a modification of the ACVA.

- In this case the processing of the modification follows the general ACVA procedure from the ACVA application to the issuance of the ruling letter.
- However, if minor changes are to be made, such as clarifying the text of the ACVA ruling or simply adding items to the application, the head of CVCI may modify procedures without working-level meetings and committee deliberation.
- However, if it is impossible to report the customs value according to the original ACVA ruling due to significant changes in the transaction details, etc., the original ACVA ruling must be withdrawn.

In addition, the head of the CVCI may modify, withdraw or revoke the ACVA ruling that has already been notified of the result if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change in the facts that served as the basis for the ACVA ruling.

18 Until when can one withdraw ACVA application?

Applicants may cancel the ACVA application at any time before the head of CVCI notifies the results of the ACVA application.

- And the ACVA application is also deemed as 'withdrawn' in case the applicants express 'dissent', do not seek re-examination within 30 days after the receipt of An Opinion Letter of ACVA Decision or do not express whether to consent.

1문 1답

부 록

19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ACVA 검토를 본부세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심사 통일성 유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음

- 또한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ACVA 검토가 관세평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였음

20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에 신청인이 참석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참석이 허용되지 않으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함

- ACVA 위원회는 본부세관장의 검토 내용이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으로 위원장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신청인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참석이 허용됨
- 또한,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ACVA 위원회 위원을 개별 접촉하여 심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21 ACVA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 ACVA 심사결과(검토의견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전심사 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함

- 관세평가분류원장은 ACVA 검토의견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신청인이 부동의로 제출하고 기한 내에 재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 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함
-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부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함

F A Q

APPENDIX

19 What is the purpose of the ACVA Committee?

When ACVA examination is commissioned to regional customs offices, issues may arise regarding consistency of the examination, so the 'ACVA committee' was established at the CVCI.

- The head of regional customs offices are required to review ACVA examination whether it wa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by hosting working-level meetings before he/she requests deliberation to the committee.

20 Can the applicant attend the ACVA committee?

In general, it is not allowed, but it is possible if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 The ACVA committee is an internal decision-making process that deliberates whether the review by the head of the regional customs office is appropriate in light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o only when applicants are required to give explanation for fact-checking, they are allowed to attend.
- In addition, the applicants(including his/her representative) must not personally contact ACVA committee members to influence the deliberation.

21 What would happen if applicants disagree with ACVA decision?

Disagreement with ACVA decision (opinion letter) is interpreted in a way that applicants have withdrawn their application.

- The head of CVCI shall send An Opinion Letter of ACVA Decision to applicants, who in turn shall respond back to the head of CVCI in writing within 30 days after the receipt of the opinion letter.
- Being expressed as 'dissent' and not seeking re-examination within the defined period of time, or failing to express 'consent' or 'dissent' constitute withdrawal from the ACVA application.
- And it should be noted that 'dissent' on a specific item means withdrawal from the ACVA application only for the item concerned.

1문 1답

부 록

22 ACVA '결과를 통보받은 날'은 언제인가요?

ACVA 적용(유효)기간의 시작일과 그 연장 신청 및 가산세 관련 규정의 ACVA '결과를 통보받은 날'과 '결과 통보일'은 "ACVA 결정서(고시 별지 제30호 서식)를 송달받은 날"이 적용됨

- 다만, 재심사 신청과 관련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ACVA 검토의견서(고시 별지 제29호 서식)를 송달받은 날"이 적용됨

1. 재심사 신청 :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법 제37조제3항)
2. ACVA 유효(적용)기간 : ACVA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관세청장이 연장을 허용한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 (영 제31조제7항제4호)
3. 유효(적용)기간 연장 : ACVA 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2년 연장을 신청 (영 제31조제7항제4호)
4. 가산세 : ACVA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ACVA 결정내용에 따라 ACVA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 (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23 납세자 제출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나요?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비밀유지 및 사전심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음

- 또한, 신청인과 본부세관 심사부서장은 사전심사를 시작하는 때에 청렴협약서를 상호 교환하고 있으며, 신청 철회 시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모두 반환하도록 하는 등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있음

FAQ

APPENDIX

22 When exactly is 'the day when the results were notified'?

The day "ACVA ruling letter(annex No. 30 form of Notice)" is served shall apply to the first day of the ACVA application, the application for extension, and the ACVA 'day of notification of result' and 'day of notification of result'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additional duties.

- However, for the 'day of notification of the result' related to the re-examination application, the "day on which the "An Opinion Letter of ACVA Decision (annex No. 29 form of Notice)" is served" is applied.

1. Application for re-examination :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of the result (Article 37.3 of the Act)
2. ACVA validity (application) period : within the last day of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date falling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of ACVA ruling falls, or within the last day of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date falling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ACVA ruling falls if the Commissioner of the KCS permits an extension at the request of the taxpayer (Article 31.7.4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3. Extension of validity (application) period : Application for a 2-year extension may be submitted from 2 years after the date of notification of ACVA ruling, up to 30 days before the last day of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date falling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he result falls (Article 31.7.4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4. Additional duties : Additional duties exemption from penalties for mis-declaration in case of correction of the amount of tax reported and paid prior to notification of ACVA examination according to the ACVA ruling within 2 months after ACVA ruling is issued (Article 42-2.1.3 of the Act)

23 What does the customs do for confidentiality?

Under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KCS stipulates that all documents provided by taxpayers shall be kept confidential and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ACVA rulings.

- "Integrity Pledge" is supposed to be mutually exchanged between taxpayers and a customs office, at the start of the ACVA process. All the documents submitted are returned when an applicant withdraws ACVA application.

1문 1답

부 록

24 ACVA 결정 후 신청 전 수입분을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ACVA는 관세조사와 다르게,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신청 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한 수정신고를 강제하지 않음

- 다만, ACVA 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2개월 이내에 ACVA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 하는 것을 권장함

25 연례보고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ACVA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연례보고서를 ACVA를 검토한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다만,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또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 당해연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F A Q

APPENDIX

24 After an ACVA ruling is issued, do taxpayers have to amend customs declaration made before ACVA application?

ACVA examines the appropriateness of customs value in 'future' importation, unlike PCA, so amendment of customs declaration on goods imported before ACVA application is not required.

- Taxpayers are advised to correct the amount of tax paid before the notification of the ACVA result within 2 months after the ACVA ruling is issued since additional tax may be exempted if they declare modified customs value.

25 When is the due date of Annual Report?

Applicants notified of ACVA ruling shall present an annual report to the head of regional customs office who has examined ACVA application, within 6 months after the closing date of the business year.

- Due date may be extended by not more than one month, at request of taxpayers who find it difficult to present required documents because of some challenges, like delayed information sharing by their headquarters.
- The applicant may present the annual report for a given year combined with that for the following year, in case less than 6 months are left from the date of ACVA ruling issuance until the closing date of the business year.

1문 1답

부 록

26 연례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연례보고는 납세자가 ACVA에서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부합하게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고 있는지를 사후 확인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고, 납세자는 연례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1.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출자관계, 재무제표, 수입물품 전체 현황,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별 가격산출방법
5. 주요 매입처별 매입원가 및 매출처별 매출원가 등 상품 및 제품 가격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6. 그 밖에 ACVA 결정서의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통보한 사항 및 본부세관장이 연례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7 ACVA 적용(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 신청할 수 있나요?

ACVA는 AEO 제도와 달리 별도의 갱신 절차가 없음

- 적용(유효)기간이 만료되면 ACVA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또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적용기간 동안 연례보고서를 통해 결정서 내용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최초 ACVA 신청 시보다 수월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F A Q

APPENDIX

26 Please specify how to write Annual Report.

The purpose of annual report is to monitor taxpayers make a customs declaration pursuant to ACVA rulings issued. To this end, taxpayers shall submit the annual report with the following elements included.

1. Realization or non-realization of grounds or assumption which the Method of determining customs value is based on
2. Customs value calculated from the determined Method, and calculation process thereof
3. Documentary evidence on how discrepancy has been dealt with between computed customs value and price actually paid
4. Business history, business model, organizational structure, investment relations, financial statement, the overall current state of imported goods, import-related contract, and how to compute customs value by import goods.
5. Information necessary for exa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merchandise/product value like purchase/sales cost
6. Any other matters notified to be included in the annual report of the ACVA decision and information deemed necessary by head of regional customs office for examination of the annual report

27 Is ACVA ruling renewable after its expiry?

Unlike AEO program, ACVA does not require renewal process

- When it expires, taxpayers shall apply for ACVA again with all the required documents attached.
- While it is valid, monitoring system, in a form of annual report, is up and running to check if taxpayers' value declaration has conformed to ACVA rulings. That means, for the second-time ACVA applicants, the application process is expected to be more effective and facilitative than the first application process.

1문 1답

부 록

28 ACVA 신청 또는 결정 후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나요?

ACVA 접수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해당 신청물품에 대해서는 잠정가격 신고를 할 수 있음

- 잠정가격신고는 원칙적으로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것이나, ACVA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포함하였음
- 다만, ACVA 신청을 이유로 한 잠정가격신고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는 해당 ACVA 결정서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야 함
- 또한, ACVA 결정서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잠정가격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음

29 이전가격(TP) 사후보상조정이란?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란 특수관계 기업 간 유형자산(물품), 무형자산, 용역, 금융 등의 매매·임대차 등 다양한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Price)을 말하는 것으로, 관세 관점에서는 결국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의 거래에서의 가격을 말함

- 내국세 목적 상 적정한 이전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OECD TP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비교가격 제3자가격(CUP) 방법, 재판매가격(RP) 방법, 거래순이익률(TNMM) 방법 등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정상가격 범위(Arm's length Range)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이란 특수관계 기업 간 거래에서 실현된 이익수준지표(PLI, 흔히 영업이익률 등이 사용됨)가 정상가격 범위에 들어가도록 사후에 이전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함

F A Q

APPENDIX

28 Can I file a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after applying for ACVA or decision is made?

From the date the ACVA application receipt is issued,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s can be made for the requested products.

-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is, in principle, done when the value to be reported is not finalized at the time of value declaration, but it was made available in 2008 to promote the ACVA system.
- However, the final value declaration for the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based on the ACVA application must follow the valuation method on the ACVA ruling.
- In addition, if the customs value determination method in the ACVA ruling requires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may be made.

29 What is transfer price(TP) compensating adjustment?

The term 'transfer price' refers to the price applied to various transactions such as purchase and rental of tangible assets (goods), intangible assets, services, and finance between related parties, and in terms of customs, it means the price of imported goods between related parties.

- For domestic tax purposes, the appropriate transfer price is the arm's length price, such as the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CUP) method, Resale Price (RP) method, and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TNMM), as specified in the International Tax Adjustment Act (OECD TP Guidelines). It is judged based on the arm's length range determined by the calculation method.
- ‘Transfer price compensation adjustment’ refers to post-transfer price adjustment so that the profit level indicator (PLI, often used, operating profit ratio, etc.) realized in the transaction between related parties falls within the arm's length price range.

1문 1답

부 록

30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수용 배경

다국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및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함

- 관세평가는 수입 이전에 결정된 거래가격을 기본으로 하나, 이전가격 책정은 기간별 사후 가격조정을 필요로 함
- 이러한 두 제도 간 차이를 조화시키기 위해 관세평가 상 '가격조정약관(Price Review Clause)'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TP 사후보상조정 금액에 대한 잠정가격 신고 절차 도입

31 사후보상조정 금액에 대한 잠정가격신고 요건은?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이 이전가격 책정에 관한 규범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OECD TP Guideline)에 부합하고, 이전가격 관련 문서들(TP Documents)이 관세평가 상 '가격조정약관(Price Review Clause)'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잠정가격 신고를 허용하고 있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기 위한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의 '가격조정약관'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음(「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제2의3호, 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참조)

- 실질적 요건으로 ①'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②조정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어야 하며, ③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될 것으로 판단되어야 함
- 아울러, 형식적 요건으로 ①납세자가 ACVA 결정 또는 APA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②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서'에 관련 TP 문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F A Q

APPENDIX

30 Background of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for a compensation adjustment

In order to support stable business activities of MNEs and create a sound tax-compliant climate, a reporting procedure for transfer price compensation adjustment system was established.

- Customs valuation is based on the transaction value determined before import, but transfer pricing requires post-price adjustment for each period.
- In order to reconcile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systems, the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procedure for the TP compensating adjustment amount is introduced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Price Review Clause' have been met in the customs valuation.

31 Requirements for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for a compensation adjustment

MNE's compensation adjustment conforms to the OECD TP Guideline, a standard for transfer pricing, and permits a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if the transfer price documents meet the formal requirements of the Price Review Clause in the customs valuation.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the 'Price Review Clause' of the transfer price compensating adjustment for adjustment to the arm's length pr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e 「International tax adjustment Act」 are as follows (see Article 16.1.2-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3.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 As a practical requirement, ①the amount to be adjusted in accordance with the 'transaction value adjustment plan for imported goods established by the seller and buyer' ②must be 'actually paid or received', and ③it must be judged to be objectively distributed and calculated for the imported goods of the transaction.
- In addition, as a formal requirement, ①the taxpayer must obtain an ACVA ruling or APA prior approval, and ②submit the relevant TP documents to the head of customs office in the 'Import Goods Transaction Value Adjustment Plan' one month before the import declaration.

ACVA 서식

부록

[고시 - 별지 제20호 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서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담당자 및 전화번호	
	⑤ 주 소			
대리인	⑥ 법인명(상호)		⑦ 담당자 및 전화번호	
⑧ 수입 예정 물품				
⑨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⑪ 본사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				
⑫ 주통관지 관할 본부세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사전상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 주통관지 관할 본부세관은 신청인의 “직전년도 수입물품 중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관할 본부세관”으로 작성(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ACVA 서식

부부

[고시 - 별지 제22호 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갑)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

(처리기간 : 1년)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 · 지점관계 ☐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수입 예정 물품		(품목별 · 규격별 명세 기재)		
⑨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⑪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을지 작성)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 사업내용 ·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산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3.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국제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 ·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 포함)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영 제23조 참조)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 · 매출원가(도매 · 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 · 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별로 구분한 것) –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9.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관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수입 예정 물품(⑧)은 신청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건부터 사전심사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의 전일까지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고시 제43조제3항 및 제51조제10항에 따라 반려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고시 제5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에는 반려 또는 철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ACVA 서식

부 록

[고시 - 별지 제22호 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을)

⑪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 아래의 내용을 자유형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하고 신청서 갑지에 첨부하여야 하며, 작성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제출서류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1. 거래내용

- 거래구조도
- 거래의 조건 또는 전제(품목별로 구분되는 경우 구분 작성)
- 최근 5년간 공급자별, 품목별, 규격별 수입가격 현황(신청물품에 한함)

2. 거래당사자간 수입가격 결정방법

- 정상가격(이전가격) 산출방법(T/P 가이드라인의 방법)
- 가격 산출 방법 또는 계산식
- 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

3. 세관신고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관세법」 제30조에서 제35조 중 1)
- 가격 산출 방법 또는 계산식
- 선택 경위 및 이유 설명

4.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여부

- 비교가격법에 의한 비교(「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
 - 비교가격 존재여부 및 비교가격과 신청물품의 가격 비교
- 거래상황법에 의한 비교(「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제2호)
 - 통상적인 가격결정 방법,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 등과 비교

5. 세관 심사실적 등

- 세관으로부터 기업심사를 받은 경우 심사기간, 대상기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을 통보받은 경우 품목별 통보일자, 동종동류비율
-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를 받은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 교부일자, 과세가격 결정방법

ACVA 서식

부 록

[고시 - 별지 제29호 서식]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 · 지점관계 ☐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⑩ 사전심사 검토의견			⑪ 근거 또는 이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영향 미침		
		영향 미치지 않음		
관세법 제3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가산요소()		
		공제요소()		
관세법 제33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____조 적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귀 하				
※ 1. 검토의견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2. 검토의견에 부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ACVA 서식

부 록

[고시 - 별지 제30호 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 · 지점관계 ☐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 . ~ 20 . . .	⑩ 통관예정세관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⑫ 신청내용			
⑬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⑭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u>〈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u> ※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CVA 서식

부 록

[고시 - 별지 제30호 서식 〈뒷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6.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 나.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 다.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4호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심사 적용기간을 최대 2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CVA 서식

부 록

[고시 - 별지 제34호 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연례보고서

보고자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결정물품		(첨부가능)		
⑤ 회계연도			⑥ 통관세관	
⑦ 관련 기업	법인명(상호)		대 표 자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 · 지점관계 ☐ 기타(관계:)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결과				
⑨ 적 용 기 간				
⑩ 실제 거래가격 결정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산출과정)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결과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및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출자관계, 재무제표, 수입물품 전체 현황,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별 가격산출방법 5. 주요 매입처, 매출처별 매입원가 및 매출원가 등 상품 및 제품 가격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6.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ACVA 신청 구비서류 가이드라인

부 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2호서식) 및 세부목록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 사업내용 ·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 회사 설명자료(연혁, 수입품목, 관계사간 출자관계도, 조직도, 사무분장, 사업계획 등) ◆ 수입물품 거래도(물품 및 자금의 이동, 거래상대방, 품목 등) ◆ 특수관계자간 거래현황(거래처, 수출입물품 등 거래현황) ◆ 비특수관계자간 거래현황(거래처, 수출입물품 등 거래현황) ◆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사업계획, 성과, 실태 등 내부보고서) ◆ ACVA 신청물품 등 특정(품목번호, 카다록 · 도면 등 물품 설명자료, 수출자 상호, 무상수입물품 포함 여부 등)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재무자료 및 구분손익계산서(상 · 제품별 / 사업부별 / 제품군별 / 업태별 / 도 · 소매별 / 주요 수입품목별 등) ◆ 최근 3년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정상가격산출신고서 등 부속서류 포함)															
2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 수출입거래계약 현황(변경이력 포함 전체 계약서 리스트, 계약서 변경사유 및 수정계약 내용 설명, 실제계약 이행 증빙서류) ◆ 영문 및 국문 거래계약서															
	<table border="1"> <thead> <tr> <th>서류명</th> <th>확인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수입물품 구매대리(대리점)계약서</td> <td rowspan="3">실제지급가격</td> </tr> <tr> <td>- 하자보증계약서, 연구개발용역계약서</td> </tr> <tr> <td>-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 · 경영지원 계약서</td> </tr> <tr> <td>- 기술도입(용역)계약서, 상표권 · 저작권 등 지재산 사용계약서</td> <td>로열티</td> </tr> <tr> <td>- 수수료 · 중개료 등 계약서</td> <td>수수료</td> </tr> <tr> <td>- 임가공 · OEM 계약서</td> <td>생산지원</td> </tr> <tr> <td>- 용선계약서, 포괄보험계약서</td> <td>운임 · 보험료</td> </tr> <tr> <td>- 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td> <td>용기 · 포장비용</td> </tr> </tbody> </table> ◆ 경영지원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7항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포함)	서류명	확인사항	-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수입물품 구매대리(대리점)계약서	실제지급가격	- 하자보증계약서, 연구개발용역계약서	-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 · 경영지원 계약서	- 기술도입(용역)계약서, 상표권 · 저작권 등 지재산 사용계약서	로열티	- 수수료 · 중개료 등 계약서	수수료	- 임가공 · OEM 계약서	생산지원	- 용선계약서, 포괄보험계약서	운임 · 보험료	- 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
서류명	확인사항															
-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수입물품 구매대리(대리점)계약서	실제지급가격															
- 하자보증계약서, 연구개발용역계약서																
-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 · 경영지원 계약서																
- 기술도입(용역)계약서, 상표권 · 저작권 등 지재산 사용계약서	로열티															
- 수수료 · 중개료 등 계약서	수수료															
- 임가공 · OEM 계약서	생산지원															
- 용선계약서, 포괄보험계약서	운임 · 보험료															
- 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	용기 · 포장비용															
3																

ACVA 신청 구비서류 가이드라인

부 록

구분	구비서류(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2호서식) 및 세부목록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 연도별 · 물품별 · 수출자별 수입가격 산출내역[계산공식(Formula) 등 포함 엑셀자료] - 권장소비자가격, 국내판매가격, Price List, 할인율, 목표(예산) 영업이익률, 제조원가, Mark-Up율 등 수입가격 산출공식의 각 구성항목에 대한 설명자료 및 근거자료															
	◆ 수출자와 수입자 간 가격협상 증빙자료(이메일, 회의자료, 내부품의서 등)															
	◆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금액에 대한 설명자료 - 연도별 / 물품(수입, 수출, 국내 제조 · 매입 등 구분), 용역 및 기타별 / 거래상대방별 사후보상조정 금액(지급 또는 수령 여부 포함) 내역, 사후보상조정 전후 손익계산서 등 사후보상조정금액 상세 계산내역 및 근거자료 - 사후보상조정금액의 처리계획 설명자료 및 근거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 TP 산출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변동내역 등 설명자료 및 근거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 그룹 차원의 이전가격 정책(TP Policy), 가이드라인 등(영문 및 국문)															
5	국세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 APA 진행 여부 및 APA 신청 · 조정 · 승인서 · 연례보고서(첨부서류 포함), 상호합의(MAP) 신청 · 합의서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 ·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 포함)															
	◆ 이전가격 분석자료(TP Study, TP Report)															
	◆ 최근 3년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															
	◆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 최근 3년 그룹 본사 Annual Report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영 제23조 참조)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비교가격 존재 여부 및 비교가격과 ACVA 신청물품의 가격비교 자료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WTO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입가격이 결정되었음을 설명하는 자료 및 근거자료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 · 매출원가(도매 · 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 · 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별로 구분한 것) –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 회계자료															
	<table><tr><th>구분</th><th>서류명</th></tr><tr><td rowspan="2">회계처리 관련 코드 일람표</td><td>- 계정과목 코드집, 거래상대방코드(국내 · 국외), 품목코드(제품, 반제품, 원재료) 및 설명서</td></tr><tr><td>- 품목코드 변환표(2중 코드 사용시), 부서코드 및 전표유형코드, 회계처리규정집(유사 지침이나 매뉴얼), 총계정원장(전표번호/회계일자/계정/거래처/차/대/통화/금액/적요란 포함)</td></tr><tr><td>총계정원장</td><td>- 계정과목별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항목 연계표</td></tr><tr><td rowspan="2">보조원장</td><td>- 매입장, 매출장(용역,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포함) (전표번호/거래일자/거래처/품목/수량/통화/금액란 포함)</td></tr><tr><td>- 유형자산명세서(기초잔액, 당기증감액, 기말잔액, 감가상각누계액, 미상각잔액)</td></tr><tr><td rowspan="2">원가계산</td><td>- 재고자산 수불부, BOM 등 자재명세서(작성부서, 변경이력 포함)</td></tr><tr><td>- 주요물품 원가명세서</td></tr><tr><td>기타</td><td>- 기타 회계 · 세무 관련 보유 자료</td></tr></table>	구분	서류명	회계처리 관련 코드 일람표	- 계정과목 코드집, 거래상대방코드(국내 · 국외), 품목코드(제품, 반제품, 원재료) 및 설명서	- 품목코드 변환표(2중 코드 사용시), 부서코드 및 전표유형코드, 회계처리규정집(유사 지침이나 매뉴얼), 총계정원장(전표번호/회계일자/계정/거래처/차/대/통화/금액/적요란 포함)	총계정원장	- 계정과목별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항목 연계표	보조원장	- 매입장, 매출장(용역,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포함) (전표번호/거래일자/거래처/품목/수량/통화/금액란 포함)	- 유형자산명세서(기초잔액, 당기증감액, 기말잔액, 감가상각누계액, 미상각잔액)	원가계산	- 재고자산 수불부, BOM 등 자재명세서(작성부서, 변경이력 포함)	- 주요물품 원가명세서	기타	- 기타 회계 · 세무 관련 보유 자료
	구분	서류명														
	회계처리 관련 코드 일람표	- 계정과목 코드집, 거래상대방코드(국내 · 국외), 품목코드(제품, 반제품, 원재료) 및 설명서														
		- 품목코드 변환표(2중 코드 사용시), 부서코드 및 전표유형코드, 회계처리규정집(유사 지침이나 매뉴얼), 총계정원장(전표번호/회계일자/계정/거래처/차/대/통화/금액/적요란 포함)														
	총계정원장	- 계정과목별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항목 연계표														
	보조원장	- 매입장, 매출장(용역,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포함) (전표번호/거래일자/거래처/품목/수량/통화/금액란 포함)														
		- 유형자산명세서(기초잔액, 당기증감액, 기말잔액, 감가상각누계액, 미상각잔액)														
	원가계산	- 재고자산 수불부, BOM 등 자재명세서(작성부서, 변경이력 포함)														
- 주요물품 원가명세서																
기타	- 기타 회계 · 세무 관련 보유 자료															
	◆ 외환자료															
	- 해외관계사별 무역의 송금내역 및 주요 지급사유 소명자료															
	◆ 세무조사결과 자료															
	-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이전가격소득금액통지서															
	- 해외 관계사에게 지급한 경영지원비 등 용역거래비용에 대한 손금부인 내역, 개별기업보고서 상 비교대상기업과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비교대상기업이 다른 경우 비교대상기업															
	◆ 제1항 적용 가능 여부 및 가산요소 등 누락 여부 검토자료															
	①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가산요소 검토자료															

ACVA 신청 구비서류 가이드라인

부 록

구분

구비서류(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2호서식) 및 세부목록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 ACVA 신청물품 구매 프로세스 설명자료

– 수입실적 상위품목 기준 (제품 문의 → 오더 ~ 대금결제 → 국내창고 입고 → 판매 및 판매 이후 A/S)까지의 전체 프로세스 설명자료[실제 예시자료(P/O, Invoice, 이메일 자료 등)와 함께 설명]

◆ 외환자료

– 해외관계사별 무역의 송금내역 및 주요 지급사유 소명자료

◆ 세무조사결과 자료

–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이전가격소득금액통지서

– 해외 관계사에게 지급한 경영지원비 등 용역거래비용에 대한 손금부인 내역, 개별기업보고서 상 비교대상기업과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비교대상기업이 다른 경우 비교대상기업

◆ 제1항 적용 가능 여부 및 가산요소 등 누락 여부 검토자료

①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가산소요 검토자료

구분	서류명	확인사항
로열티 지급내역	– 로열티 지급내역 및 산정근거	로열티
	– 기술도입(용역)료 지급내역 및 산정근거	
	– 설계비, 연구개발비 등 지급내역 및 산정근거	
수수료 등 지급내역	– 수수료, 중개료 지급내역 및 산정근거	수수료
	– 용역비용 지급내역 및 산정근거	
생산지원 내역	– 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공급 내역	생산지원
운임·보험료 지급내역	–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지급내역서	운임 등 비용
	– 보험료 지급내역서	

② 관세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간접지급금액 검토자료

구분	서류명	확인사항
비용지급 내역	– 금융비용 지급내역서	실제지급금액
	– 관계사 마케팅비용 부담금 산정내역, 산출내역 및 실제 지급·영수자료	
	– 하자보증 프로세스(정책, 계약상 하자보증주체, 수입후 하자보증 수행주체 등) 설명자료	
	– 하자보증비용 내역 및 산정근거	
	– 연구개발용역비용 내역 및 산정근거	
	– 경영지원비용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 실제 지급·영수자료(관계사 배분기준 포함)	
	– 관계사 지급비용별 요약서	

③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공제요소 검토자료

④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 여부 검토자료

9

2025
ACVA 연차보고서
2025 ACVA Annual Report

| 발행일 | 2026년 7월

| 발행처 | 관세평가분류원

| 발행인 | 관세평가분류원장 강병로

| 편집 | 관세평가과 이승연 과장,
하정오, 김현영, 김기영, 정혜숙, 이승은, 최승웅

| 신청 및 문의처 안내 |

- ACVA 제도 :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67 (F. 042-481-7869)
- ACVA 총괄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042-714-7508, 7503 (F. 042-936-3526)
- ACVA 사전상담 및 신청문의
 - 서울세관 심사1국 심사총괄1과 02-510-1220 (F. 02-2015-7831)
 - 서울세관 심사1국 심사3관 02-510-1280 (F. 02-2015-7834)
 - 부산세관 심사국 심사1관 051-620-6331 (F. 051-620-1170)
 - 부산세관 심사국 심사2관 051-620-6347 (F. 051-620-1177)
 - 인천세관 심사국 심사3관 032-452-3355 (F. 032-722-3826)

| 인쇄 | 디자인아람 042-625-2771
